



'18. 9월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회의록

2018. 9.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18. 9월 2차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회의록

〈회의개요〉

- ◆ 일 시 : '18. 9. 13.(목) 14:00~18:00
- ◆ 장 소 : 신청사 8층 공용회의실
- ◆ 참 석 : 11명 외부위원(8), 내부위원(3)
- ◆ 심의안건 : 25건
- ◆ 심의결과 : 적정 18건, 부적정 7건

2018년 9월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2일차)

간 사(시정연구팀장)

일단 바쁘신 일정 중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위원회, 심의회 간사를 맡은 조직담당관의 시정연구팀장
OOO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술용역심의회 위원장이신 서울시립대학교 OOO 교수님이십니다.

(일동 박수!)

중앙대학교 OOO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O O O 위원

네, OOO입니다.

(일동 박수!)

간 사(시정연구팀장)

성신여자대학교 OOO 교수님 오고 계시는 중이요.

국토연구원 OOO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 위원

반갑습니다.

(일동 박수!)

간 사(시정연구팀장)

건축문화유산연구원 ○○○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명지대학교 ○○○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서립대학교 ○○○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예산담당관 ○○○ 팀장님이십니다.

(일동 박수!)

평가담당관 ○○○ 팀장님이십니다.

(일동 박수!)

○○○ 위원

저는 안 하실 거예요?

간 사(시정연구팀장)

죄송합니다.

위 원 장(○○○ 위원)

자주 오시니까요.

○○○ 위원

저 때문에 안 보이시나 봐요.

간 사(시정연구팀장)

성균관대학교 ○○○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 위원

반갑습니다.

(일동 박수!)

간 사(시정연구팀장)

일단 과반수 참석하셨기 때문에 정족수가 이루어졌습니다.

9월 정기 학술심의회는 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로, 총 3일에 걸쳐 64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심의의 두 번째 날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25건을 심의하려고 합니다.

예산금액은 39억입니다.

19년도 추진예정인 학술용역 신규 22건과 장기계속사업 3건입니다.

장기계속사업은 1번, 2번, 23번 안건인데요.

작년 심의에서 통과되어 올해 추진 중인 용역으로, 19년 예산분에 대해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심의회 첫날인 9월6일에 총 19건을 심의하였고, 예산은 45억이었습니다.

이중 16건이 적정 또는 보완으로 통과되어서, 예산 34억이 확정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학술용역에 한해 시행될 수 있도록,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엄격한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주심위원님과 내부위원의 안건별 사전검토보고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전검토보고서에는 용역비에 관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의견 중에 용역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9월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개요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이상으로 심의회 진행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예, 학술용역심의위원장 000입니다.

먼저 오늘 일단 2019년도 추진예정인 학술용역 25건 안건을 상정을 하고요.

사업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의견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설명해 주시는 분, 팀장님들한테 질문하실 것만 먼저 질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의견은 팀장이 퇴실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들끼리 의견을 교류하는, 그래서 질문과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을 좀 이렇게 잘 나누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토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거수를 통해서 적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팀장발표 3분, 위원님과 질의응답 5분, 그래서 총 8분을 원칙으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란색이 많은 것을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주심위원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시고 보완해야 될 내용은, 만약에 통과됐을 때 보완해야 될 내용은 뒤에 보완의견에 잘 적어주시면, 심의결의서에 잘 적어주시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물재생계획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울시관계자

발표자가 조금 지연이 있어서,

위 원 장(O O O 위원)

그래요?

서울시관계자

예, 오시는 대로 해서,

위 원 장(O O O 위원)

다른 데 있나요?

간 사(시정연구팀장)

다른 거 먼저 진행하시죠.

위 원 장(O O O 위원)

다른 팀이요.

서울시관계자

아직 다 도착을 안 하셔가지고요.

얼른, 죄송합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아니 왜, 안 하려고 그러나 봐요.

O O O 위원

위원장님, 오늘은 25건 중에서 몇 건 정도 이런 게 있나요?

위 원 장(O O O 위원)

없습니다.

○○○ 위원

없습니까?

위 원 장(○○○ 위원)

원하시면 다,

○○○ 위원

원하면 다 통과도 가능해요?

위 원 장(○○○ 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학술용역 총량제 법규화 되어 있지 않지만, 예상규모는 어느 정도 감안하고 갑니다.

작년에 105억 중에서 84억인가 이 정도, 신청은 105억 들어왔는데 한 84억 정도로 끊었고요.

올해는, 그런데 올해는 신청이 한 100억 정도로 들어온 상태이고, 지난 주, 오늘, 내일까지 해서 총액 규모를 맞추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위 원 장(○○○ 위원)

그런가요?

○○○ 위원A

어차피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이고 필요하다면 해야죠.

간 사(시정연구팀장)

진행관계상 3, 4, 5번을 먼저,

위 원 장(○○○ 위원)

3, 4, 5, 예, 그럼시다.

간 사(시정연구팀장)

예, 교통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호 안건

서울형 통합이동서비스 실행 가이드라인 연구

제4호 안건

서울시 스마트 교통수요관리 정책 도입방안 연구용역

제5호 안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위 원 장(O O O 위원)

3, 4, 5를 한 분이 다 발표하시나요?

제3, 4, 5호 안건설명자

예.

위 원 장(O O O 위원)

그러면 3, 4, 5 세 개를 다 발표하시고 한꺼번에 물어보시는 걸로 이렇게, 건당 3분 정도씩, 다 검토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작하시죠.

제3, 4, 5호 안건설명

제3, 4, 5호 안건설명자

서울시 교통정책과 교통수요관리팀장 OOO입니다.

첫 번째로 서울형 통합이동서비스 실행 가이드라인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통합이동서비스 마스에 관한 연구가 한창인데요.

서울시에서도 통합이동서비스, 마스서비스에 대한 플랫폼 구축을 올 하반기에 착수를 해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시행할 연구는 저희가 공공의 어떤 데이터, 지하철, 버스, 그다음에 택시 승하차정보, 따릉이, 나눔카까지 통합을 해서 플랫폼을 구축한 다음에, 민간사업자들에게 제공을 해서 시민들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런 공공서비스를 민간에게 제공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제공을 할 것인지, 두 번째는 민간사업자들이 그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또 얻어지는 파생적인 데이터들, 빅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떻게 저희들한테 환류를 해서 제어를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현재까지 어떤 기준과 원칙이 없어서, 그러한 부분을 가이드라인 학술용역을 통해서 마련을 하고, 시범사업과 향후 확대 사업을 시행할 계획

입니다.

주된 내용은 그거이고요.

부가적으로 해외 사례라든지, 이걸로 파생적으로 얻어지는 데이터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지, 추가적으로 같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 스마트 교통수요관리 정책 도입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저희가 한양도성을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17년3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전국 최초로 지정을 받았고요.

올 8월에 종합대책이 승인이 돼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30년까지 한양도성에 대해서 강력한 교통수요관리정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단은 시스템구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친환경등급제와 연계를 해서,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먼저 시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향후에는 면적인 혼잡통행료 확대까지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거에 혼잡통행료는 지금 남산1, 3호 터널 받고 있지만, 과거의 확대방안 연구에서는 일률적으로 ‘요금을 얼마를 받았을 때 탄력적일 것이냐.’ 그런 연구를 수행해 왔었는데, 저희가 스마트시대에 맞추어서 그러면 요금절약이라든지 또 향후에 미세먼지, 4차 산업혁명, 주 52시간 이런 거하고 맞추어서 교통패턴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한번 예측을 해보고 그런 요금제도 예를 들면 시간대에 따라서, 또는 차량종류에 따라서, 또 어떤 시민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부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서, 저희가 혼잡통행료를 만약에 확대하겠다고 그러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전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연면적 1,000m² 이상인 건물에는 면적과 용도에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통을 유발하는 원인자한테 어떤 징벌적인 성격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 연간 한 1,400억 정도의 부담금이 부과가 되고 있고, 다만 이게 유발부담금이라는 게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부과를 하는 게 아니고, 교통유발을 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한 패널티 성격과 그러면 이 건물주들이 또는 소유주들이 교통수요를 감축하려는 프로그램에 가입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그 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11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유발부담금 제도 자체가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도청법에서 부과되는 게 어떤 큰 원칙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위임해서 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많은 혼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토부 유권해석을 한다든지 법제처에 질의를 했을 때, 국토부와 법제처가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온다는지, 그래서 이번에 이런 혼란이 되는 부분을 좀 어떤 하나의 통일된 원칙을 마련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경감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연 180억 정도가 이 프로그램에서 경감이 되는데, 얼마만큼의 교통감소효과가 있는지 사실은 계량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효과 측정, 그다음에 11개 프로그램에 있어서 향후에 정말 측정이 가능이 하고 실효성이 있는 제도로 한번 전반적으로 개편을 하고자, 이 학술용역에서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제1, 2, 3호 안전심의

위원장(○○○ 위원)

주심위원님, 질문 하시죠.

○○○ 위원

일단 첫 번째 과제의 그 원가계산을 보니깐요, 그러니까 실제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설문조사와 행정조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비 부분에 조사비 항목이 편성되어 있는데, 인건비를 보니까 사실 연구보조원의 업무가 이 설문 및 행정조사의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의 인건비도 같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이게 약간 중복편성 여부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 연구보조원의 정확한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가 약간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제3, 4, 5호 안전설명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도로 편성을 했는데, 사실 저희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를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스마트 교통수요관리정책 경우는,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에 따라서 사실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제명이 앞에 '스마트'라고 하는 게 붙은 것을 보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TDM 기법 외에, 뭔가 발달된 여러 가지 IT 기술 이런 것들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를 검토를 저는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한양도성이라고 하는 공간만 이렇게 포커싱을 해서 하는 것에 어떤 그런 특별한 목적이 있는지가 사실 좀 궁금해서요.

제3, 4, 5호 안전설명자

일단 이 과업의 포커스는 녹색교통진흥지역에 한정해서 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거는 사실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면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런데 녹색교통진흥지역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의해서, 이게 지정이 되면 시장이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도청법과 관계없이 법적 기준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녹색교통진흥지역에 국한하고, 다른 지역에 확대를 하고자 하면, 또 어떤 법적인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한정 짓는 거고요.

스마트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징수 기법이라든지 새로운 IT 기술은 사실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통행관리시스템 구축을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시행할 건데, 여기에서 스마트라고 한 거는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률적인 부과가 아니고, 좀 상황과 행태와 그거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측면에서 스마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혼잡통행료에만 한정되는 건가요?

제3, 4, 5호 안건설명자

이게,

강혜경 위원

우리가 그 TDM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3, 4, 5호 안건설명자

그렇습니다.

혼잡통행료에 일단 포커스가 맞춰지고요.

저희가 사실은 교통, 처음에는 이 용역을 통해서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수요관리기법들 있으면 교통유발부담금은 앞에 사전계획 별도로 그걸, 좀 달라질 것 같고요.

혼잡통행료를 포커스로 하되, 나머지 여러 가지 수요관리 기법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된 포커스는 혼잡통행료만으로도 좀 벅찰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에 이슈가 큰 사항이라서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연구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저희는 이걸 바로 언제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여기에서 마련해 놓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일단 내년 한 하반기부터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들어가고, 어느 정도 이게 안정화되면 언제라도 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겠습니다.

○○○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원)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저는 세 번째 것, 통합이동서비스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하면요, 통합 이동하면 도시철도, 버스 말고 택시, 나눔카, 따릉이, 자율주행차, 퍼스널 모빌리티를 융합하는 계획 또는 방법을 찾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따릉이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다, 택시, 전부다는 데이터가 민간에 있거나 회사별로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이거를 융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상상이 잘 안가거든요.

제3, 4, 5호 안건설명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이터가 전부 우리 시에서 수집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입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다 가지고 있나요?

제3, 4, 5호 안건설명자

예, 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위 원 장(O O O 위원)

나눔카, 택시,

제3, 4, 5호 안건설명자

그렇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택시의 위치도,

제3, 4, 5호 안건설명자

택시 위치, 승하차 정보 이런 게 다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위 원 장(O O O 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제3, 4, 5호 안건설명자

민간에서는 그거를 오픈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상황인데,

위 원 장(O O O 위원)

예, 알았습니다.

데이터가 있다?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000 위원

스마트라는, 4번 스마트라는 명칭을 꼭 붙여야 되는 거예요?
오해도 소지도 있고,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수요기
술 저기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닌 거죠?

제3, 4, 5호 안건설명자

예, 그렇습니다.

000 위원

명칭을 조정해도 되나요?

제3, 4, 5호 안건설명자

예, 조정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000 위원

예, 한다면요.

위 원 장(O O O 위원)

예, 그러면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설명자 퇴장.)

그러면 건건이 토의하고 건건이 거수를 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
니다.

세 번째 교통정책과의 통합이동서비스 실행 가이드라인은 예산담당과
에서는 부적정 의견을 주셨어요.

000 위원A

저희들이 우려하는 거는 단순히 연구로서 끝날 것 같다는 염려가 사실
은 돼요.

통합서비스라는 게 현재도 환승할인이나 일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지
금 적용하고 있는 그런 환승할인이나 이런 체계가 개편 없이, 단순히
이런 가이드라인을 연구한다고 해서 실행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환승할인을 위해서 대중교통의 적자폭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데, 다른 교통매체까지 다 합쳐서 이런 통합서비스 하면,

위 원 장(O O O 위원)

버스 타고 택시 타면 또 같이 가고 할인해 주고 이렇게 되면,

000 위원A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뭔가 기본적인 환경을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연구는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염려를 하고,

0 0 0 위원

택시 같은 경우는 민간이 운영하는데, 택시가 일종의 대중교통 버스나 이런 것 같이 이렇게 시스템이 아닌 이상은, 연계해서 이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000 위원A

지금도 나오는 이야기가 택시도 준공영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 0 0 위원

그렇게 가야만,

위 원 장(0 0 0 위원)

준공영화가 돼야,

0 0 0 위원

예, 그렇게 돼야만,

000 위원A

전체적으로 준공영제로 운영해야만 가능하거든요.

0 0 0 위원

그러니까요.

000 위원A

그런데 준공영제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위 원 장(0 0 0 위원)

그렇죠, 일본 사례도 있고요.

000 위원A

재정에서 전부다 투입을 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제도라,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할인이 중요한 거는 아니죠.

위 원 장(0 0 0 위원)

주심위원님.

0 0 0 위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준공영제로 우리가 모든 그 이동서비스를 끌고 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대중교통이라고 한다면 택시, 버스 정도까지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모든 지역까지 서비스가 다 들어가서 제공되게 되면, 사실은 이동권에 대한 제약받는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공공이 뭔가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는 플랫폼을 만들어놓으면 그런 데는 이런 어떤 민간서비스들이 만들어서, 결국은 끝까지 완벽한 통행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초를 다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OOO 위원A

제도의 취지의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비용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런 제도가 운영이 되면 비용이 투입이 되는데, 그 비용을 전적 공공기관에서 투입해야 하는 게 맞는지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OOO 위원

그런 거를 이 연구과제를 하면서 한번 그런 내용들도 검토를 하게끔 좀,

OOO 위원A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각종 기관 개편 없이 이런 연구만 자꾸 축적된다는 건,

OOO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통합이동서비스를 할 것인지에 대한 큰 틀에서의 정책결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거에 따른, 여기 용역명을 보면 가이드라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내용상으로만 보면,

OOO 위원A

그래서 염려하는 거죠.

OOO 위원

그런 정책결정 없이,

OOO 위원

플랫폼을 만든다고 가정할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를 포커싱하는 거죠.

○○○ 위원

그러면 지금 꼭 해야 하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가이드라인이면, 시급해서 지금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작성을 해야지 정책을 갖다가 만들 수가 있느냐.

아니면 조금 기다려보고 상황을 본 상태에서 가이드라인을 2, 3년 뒤에 만들어야 하느냐.

지금 만들어놓으면 한 3년간 기다렸다가, 3년 후에 그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게 된다면, 굳이 예산을 빨리 집행할 함으로써 다른 예산활용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해야 하느냐, 급해서.

가이드라인이고 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 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 좀 확인은 필요하기는 할 텐데요.

대중교통기본계획이, 그러니까 제3차 대중교통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고시가 됐고, ITS 기본계획도 수립해서 올 하반기에 고시가 되게 되면, 사실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는 여러 가지 정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 마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내용이 꼭지에 담겨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분명히 5년 내에는 뭔가 액션을 해야 되니까, 지금 단계에서 어느 정도 준비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 위원

그런데 가이드라인하면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 위원

말이 좀 그렇기는 해서,

○○○ 위원

예.

○○○ 위원

안 맞죠.

○○○ 위원

예, 안 맞죠.

위 원 장(O O O 위원)

더 이상의 의견은 없으신 것 같고요.

판단은 위원님들께 맡기겠습니다.

제가 정리하지 않고요.

내용적으로 필요하고, 다른 기존 사업에 있기 때문에 시의적절하다고 주심위원님은 말씀하셨고, ‘정말로 이게 실행이 가능할까.’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혹시 한 2, 3년 기다려진다면 그때 가서 하는 것도 방법이 다.’ 그다음에 ‘이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다른 예를 들면 택시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준공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제3호 안건결론

그러면 3번 서울형 통합이동서비스 실행 가이드 연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네 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부적정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호 안건결론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스마트 교통수요관리 정책 도입방안 연구용역이고요.

네, 주심위원, 예산담당관, 기술담당관, 조직담당관이 전부 다 적정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내용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내용적으로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적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도 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심위원님은 걱정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네.

그러면 네 번째 서울시 스마트 교통수요관리 정책 도입방안 연구용역이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네 번째 건은 걱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0 0 0 위원

예산은 조금 조정이,

위 원 장(0 0 0 위원)

예산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000 위원

용역명도,

위 원 장(0 0 0 위원)

용역명도,

000 위원

예.

위 원 장(0 0 0 위원)

스마트를 필로, TDM로 바꾸는 것은 너무 또,

0 0 0 위원

스마트만 보면,

위 원 장(0 0 0 위원)

스마트만 빼면 되나요?

그것은 아니죠?

000 위원

그러니까 녹색진흥, 교통진흥지역 내에 이 요금관리, 수요관리, 이런 쪽
이어서 그런 명칭을 갖다 집어넣으면 어떨까 싶어요.

위 원 장(0 0 0 위원)

그런 명칭으로,

0 0 0 위원

차라리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런 것보다는요, 아예 구체적으
로 혼잡통행료라고 그냥 그 얘기를 달고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
이 들거든요.

내용을 더 구체화 시키는 게요.

지금은 저는 굉장히 큰 거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어가지고
예산도 좀 그 업무 영역에 맞게 조금 조정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요.

과업기간도,

○○○ 위원

혼잡통행료는 과거에도 연구가 된 것 아닐까요?

기술담당관 몇 건 있었는데요.

○○○ 위원

13년,

위 원 장(○○○ 위원)

예, 13년,

○○○ 위원

그 전으로 해서 또 비슷하게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좀 광범위한 교통수요관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위원

같은 이름으로 해놓으면 ‘과거의 것과 똑같은 그 연구를 또 한 번 한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내용은 다를 것 같이 보이는데요.

○○○ 위원

17년도 연구하고 약간 유사성이 보이기는 하거든요.

○○○ 위원

그러네요.

○○○ 위원

제가 조금 부연을 드리면, 13년도에 평가했는데 이미 시기적으로 많이 지난 경향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간에 서울도심의 어떤 교통정책방향이라는 게 많이 바뀌어서, 지금 방향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17년도에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을 하면서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 계획수립 당시에는 지금처럼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그런 급진적인 원인들이 없어서 약간 마일드한 그런 정책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때 혼잡통행료 자체가 조금 이렇게 급진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용역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아이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00 위원

그런데 다만 혼잡통행료라고 용역명을 붙여버리면,
간 사(시정연구팀장)
예, 용역명,

000 위원

굉장히 민감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서하고 상의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 원 장(O O O 위원)

예, 상의해서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예산도 좀 있죠?

000 위원

예, 일부,

위 원 장(O O O 위원)

예, 예산,

000 위원

일부 조정.

위 원 장(O O O 위원)

예,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걱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도 다
일단은 걱정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주심위원님은 보완사항이 있었고, 일단 걱정하다고 판단이 되
고 있습니다.

제5호 안건결론

위 원 장(O O O 위원)

거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가 걱정으로 생각하시
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그래서 다섯 번째 용역도 걱정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로 가나요?

서울시관계자

먼저 2번,
위 원 장(O O O 위원)
2번인가요?
서울시관계자
예.

제2호 안건

서울시 물재생센터 처리용량 초과 유입수 영향 및 최적관리방안 연구

위 원 장(O O O 위원)
물재생시설과시죠?

제2호 안건설명자
예.

위 원 장(O O O 위원)
앉으시죠.

한 3분 정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2호 안건설명

제2호 안건설명자

물재생센터에 유입되는 초기유수 월류수 때문에 발생하는 하천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학술용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용역은 작년에 심의가 돼서 발주가 돼가지고, 금년도 5월 달에 한국상수도학회하고 계약이 되어서 현재 수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금액이 금년도 1억2,000, 내년에는 8,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액은 다소 계약단계에서 감액되어가지고 1억8,600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금액 내년도도 8,000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현재 연관되는 사항으로 해서 고양시에서 저희 하천, 그러니까 저희 물재생의 방류수 때문에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는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와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 결과 발표는 본인들이 고양시에서 7월에 발표를 하신다고 했다가, 11월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도 발생이 될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8,000으로 해서 용역수행을 마무리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제2호 안건설명

위 원 장(O O O 위원)

예, 주심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O O O 위원

이게 계속사업인데 지금이 9월인데 6월로 되어 있어서,

제2호 안건설명자

예.

O O O 위원

그런데 지금 확인했고요.

그런데 진행 중인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제2호 안건설명자

저희들이 협의, 이게 고시를 했을 때 상수도학회 한 군데 밖에 안 들어 오시다 보니까요, 유찰이 있었습니다.

유찰이 있다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졌습니다.

O O O 위원

그래서 이게 초과유입수 영향하고 최적관리방안이기에 때문에, 사계절 영향분석이 필요한데,

제2호 안건설명자

예.

O O O 위원

혹시 이렇게 늦어짐으로써 사계절 고려나 반영 이런 게,

제2호 안건설명자

그거는 내년도 한 10월 정도까지는 용역이 수행이 돼야 될 것으로 판

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그리고 연구명도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서울시 용역명에 무슨 논문, 학교 논문, 그래서 제가 이게 수정안으로 물재생센터 월류 수 최소화로 인한 최적관리방안,

제2호 안건설명자

예, 좋습니다.

○○○ 위원

이렇게 행정적으로 좀 바뀌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도요?

제2호 안건설명자

계약명칭은 별도로 있기 때문이에요, 계약서를 변경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공식적으로 외부에 이런 자료배포라든가 할 때는 그거를 참고해서, 축약을 해가지고 여러 시민 분들이 바로 아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상입니다.

위 원 장(○○○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죠.

○○○ 위원

계약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2,000입니까, 2억입니까?

제2호 안건설명자

크게 전체는 1억8,600 정도로 알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외부에서 많이 오다 보니까 정확한 금액이 아닌데, 한 1억, 원래 당초 총 그 금액을 2억으로 예산을 했는데, 한 1,200~3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8,000을 요구하신 것은 그런 정도의 추가과업이 있어서,

제2호 안건설명자

예.

○○○ 위원

한 1,4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될 거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제2호 안건설명자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위원)

또 의견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퇴실해도 좋습니다.

(설명자 퇴장.)

제2호 안건결론

위원장(○○○ 위원)

주심위원님 의견은 연구명의 수정과 여기 쓰여 있는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

예.

위원장(○○○ 위원)

이거는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 기술, 조직에서는 예산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필요한 콘텐츠에 대한 수정 이런 것들을 보완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년에 승인돼서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야 되는 사업, 장기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본 안건은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그다음에 특히 주심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잘 적어주시면 보완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8번입니다.

제8호 안건

안전기준선 수립 지침 마련 및 시범 적용 연구

위 원 장(O O O 위원)

안전총괄과시죠?

제8호 안건설명자

예, 그렇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한 3분 정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8호 안건설명

제8호 안건설명자

안전정책팀장 000입니다.

용역은 안전기준선 수립 지침 마련 및 시범 적용 연구가 되겠습니다.

배경으로서는 현재 폭우, 폭염, 지진의 새로운 유형의 안전문제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고, 안전취약계층이 있기 때문에 보호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재해위험으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서울의 어떤 도시 수준과 재난안전사고특성을 고려해서 안전기준선을 마련하여서 정책목표로 삼고, 개발사업 추진 시에 또한 기준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안전복원력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안전정책과 안전서비스 확대에 활용코자 합니다.

과업내용으로서는 안전기준선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국내 사료조사 분석, 서베이를 통한 시민 의식조사,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준선이 필요한 재난의 대상을 분석하고, 기준선 내용과 범위, 설정원칙, 설정과정과 방법 제시, 추진전략 수집 등 사전연구와 안전기준선 설정의 적정성 검증과 보완을 위해 2, 3개 재난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적용해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호 안건심의

위 원 장(O O O 위원)

감사합니다.

주심위원님, 질문 주십시오.

○○○ 위원

‘실제 사례를 적용해서 안전기준선의 적정성 내지는 안전기준의 활용도를 갖다가 검토해 보시겠다.’라는 내용은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8호 안전설명자

지금 현재 안전기준선은 국내외적으로 적용된 연구에 대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안전기준선을 적정기준선이 어느 정도인지 나름대로 분석하고, 그게 현실에 적용됐을 때 이게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실제 재난사례를 대상으로 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검증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

그렇다면 제안자님께서서는 자연재해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태풍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생빈도나 이런 것을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제8호 안전설명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그렇다면 재난을 컨트롤하겠다는 관 주도의 어떤 행동은, 그러한 것이 일어났을 때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또,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겠죠, 그게요.

제8호 안전설명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위원

자연재해의 경우에, 대부분에요.

제8호 안전설명자

맞습니다.

○○○ 위원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안전의 어떠한 베이스라인 내지는 무슨 최저기준 또 내지는 최저, 기준선이라는 게 그런 거, 보니까요.

제8호 안전설명자

예, 맞습니다.

○○○ 위원

그런 게 책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설물의 붕괴라든가 이런 것은 안전점검을 갖다가 철저히 하고 예방활동을 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재해율을 갖다가 어느 정도로 낮추겠다.’라는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은데, 주로 나오는 재난이라는 것이 자연재해인데, 자연재해에 대한 재난을 어떻게 그 수준을 정하죠?

제8호 안전설명자

아직 연구가 조금 돼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시적으로 봤을 때, 풍수해의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95mm를 설계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수방시설에 대한 대응능력을 시간당 95mm 정도로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정책을 수립하거든요.

그와 같은 개념으로서, 저희들이 그 예를 들어서 풍수해에 취약한 계층이라든가 지역 이런 것들을 이런 연구 등을 통해서 뭔가 기준을 설정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작업을 설정해서 기준을 설정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꼭 그 재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회재난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보면 재난이 한 70여 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어떠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기준이 없거든요.

법과 제도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라든가 어떤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지원할 근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배달을 하는 그 기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떤 최소 취약계층의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으면 그분들에 대해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안전예산에 대한 어떠한 그 우선순위라든가 투자의 그런 순위 이런 것들, 간접예산의 적정배분 차원에서도 필요한 연구가 되

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그렇다면 복지기준선을 갖다가, 서울시에서 기존에 했던 복지기준선의 성격을 갖다가 비슷하게,

제8호 안건설명자

그렇습니다.

○○○ 위원

그 전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에서 복지기준선은 관이, 그러니까 서울시가 취약계층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제공해야 하는, 그리고 재정을 들어서 제공해야 하는 최저의 그 수준, 그거를 갖다가 결정을 하는데 안전에 있어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취약계층은, 예를 들어서 심한 말로 ‘현재까지 재해가 일어나면 100명이 사망을 했다, 어느 정도의 강도의 태풍이 왔을 때 서울시의 취약계층이 100명이 사망했는데, 앞으로 50명으로 줄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제8호 안건설명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 위원

그렇다면,

제8호 안건설명자

그러니까 어떤 우리 정책을 실현하는데 목표로 삼는 기준을 말씀,

○○○ 위원

샘플 하나 제시를 해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재해에 따라서 샘플이 다를 수 있지만,

제8호 안건설명자

그렇습니다.

○○○ 위원

예, 제안자가 생각하고 계시는 재해와 거기에 대한 샘플, 그러니까 이럴 때 안전기준선은 뭐다.

제8호 안건설명자

저는 샘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수해, 풍수해, 비 내리는 것에 대한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당 95mm 정도의 기준에 의해서 공공에

서 그 정도는 제공해 줘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시설이라든가 수방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거든요.

○○○ 위원

그러니까 시설기준을 정하자?

제8호 안전설명자

시설이,

○○○ 위원

그다음에 안전관리의 어떠한 그 수준,

제8호 안전설명자

그렇죠.

○○○ 위원

그거를 갖다 정하자?

제8호 안전설명자

예, 그렇죠.

이게,

○○○ 위원

그런 것은 법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설계지침이나요?

제8호 안전설명자

그래서 그거는 예시적으로 그런 거고요.

○○○ 위원

예.

제8호 안전설명자

그다음에 어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물리적인 부분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외국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정확히 이와 같이 똑같은 경우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도로 그것을 적용하고 있고, 그렇다면 정부에서, 우리 시 차원에서 부담해야 될, 뭐냐, 생각해야 될 정책적, 정책목표로 추진해야 될 것과 시민들이 어느 정도 지켜야 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한다면, 지금 현재의 안전에 있어서 조금 더 그 시민들이 어떤 안전불평등이라든가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요.
그렇습니다.

○○○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봅니다.

이게 안전기준선 다시 뒤집어놓고 보면, 재난에 대한 위험도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제8호 안전설명자

예.

○○○ 위원

그래서 정책적 목표는 위험도를 조사했더니 요즘 강·남북 격차를, 지역간의 격차를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위험도가 가장 낮은 데가 여기이고 위험도 가장 높은 데가 여기이니까, 적어도 낮은 데 기준으로 마지노 정도에 있어서 모든 지역의 위험도가 동일하게끔 만들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정책적 목표에서,

○○○ 위원

여기에서 제가 요구한 것을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네요.

위원장(○○○ 위원)

정리하셨네요.

○○○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

그러한 내용 있어서...

위원장(○○○ 위원)

뭘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 위원

예.

제8호 안전설명자

그래서 하여간에 대개 사고를 많이 당하고 어떤 피해가 많이 난 지역은 사실은 취약계층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쪽의 취약계층이 그렇게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저희들이 연구를, 지금까지 연구가 된 적이 없고 그래서 연구를 해서 뭔가 새로운 기준을 정해서, 이 기준이 꼭 시설기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기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각각 시설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아까 그 풍수해와 같은 그런 기준이 될 거고 다른 기준으로 봤을 때,

위 원 장(O O O 위원)

예, 됐습니다.

됐고요.

제8호 안전설명자

예.

위 원 장(O O O 위원)

그다음에 제가 여쭙보고 싶은 것은 재난이 아까 70여 가지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 다 하세요?

제8호 안전설명자

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그러니까 어떤 재난에 대해서 하실 것인지가 적혀있나요?

제8호 안전설명자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내용 중에서 보면 그 재난 중에서 위험이 되고,

위 원 장(O O O 위원)

몇 가지 하시나요?

제8호 안전설명자

그런, 그러니까 연구가 두 가지,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사전연구단계로서, 그 과업을 어떻게 기준선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재난의 어떤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그런 것들을 정하는 용역이 지금 현재 추진하는 용역이고요.

그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기준이 나오고,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설정되면, 2단계 용역으로서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고, 2단계 용역에서는 어떤 제도적인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 원 장(O O O 위원)

아니 여기 내용은 지침 마련하고 시범적용까지 하시는 걸로,

제8호 안전설명자

시범, 그러니까 지침이 정확히 수립됐는지 시범적으로 샘플링해 본다는
것입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그러니까 어떤 재난에 대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안 정해,

제8호 안전설명자

아직 안 정해져있습니다.

70여개의 재난이 되기 때문에, 그 재난 중에서 선택을 가장 걱정하게
모델로 적용될 수 있는 재난이 무엇인지 판단, 그 연구 뭐야, 적용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걱정성을 따져보려고 하는 그런 연구내용이 되겠습
니다.

O O O 위원

그 질문이요.

이 과제를 수립을 할 때, 관련 전문가 자문이랄지 이런 과정을 거쳤나
요?

제8호 안전설명자

예, 그렇습니다.

한 두 번, 세 번 정도 거쳤습니다.

O O O 위원

그 내용은, 전문가들의 의견 제안은 어떤 건가요?

제8호 안전설명자

그래서 전문가들의 제안은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고,

위 원 장(O O O 위원)

이분들은 걱정성 판단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그렇죠?

O O O 위원

자체 심의의견은 있는데, 전 단계에 관련 TF를 했다거나 해서,

제8호 안전설명자

안전자문단에서 두 번 정도 자문했고요.

그다음에 행정연구원에서 현재 이쪽에 연구하신 분하고 자문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위 원 장(O O O 위원)

행정연구원에서 자문을 얻었다?

제8호 안전설명자

예, 했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오케이, 됐습니다.

제8호 안전설명자

그래서 그 부분에, 그분이 회의결과가 안전기준선의 개념과 범위의 명확화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필요한 연구인데 사전에 어떤, 그러니까 사전연구, 그러니까 ‘정책을 하기 위한, 이것 수립하기 위한 사전연구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두 번으로 나누어서 용역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예, 알았습니다.

OOO 위원

기술연구원이 설립이 됐는데요.

원래 안전 관련해서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는데, 그 쪽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제한경쟁으로 되어 있어서요.

제8호 안전설명자

그것도,

OOO 위원

간단하게만, 너무,

제8호 안전설명자

아직 연구원은 내년이기 때문이에요, 공개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기술연구원에서도 참여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그 연구기관이 들어와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OOO 위원

또 하나는 혹시 이게 4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인가요?

제8호 안건설명자

4개년 계획에는,

OOO 위원

없습니까?

제8호 안건설명자

예, 그렇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예, 위원님.

O O O 위원

언제까지 갈 거죠?

이게 만일 시행이 되고 나면 후속연구가,

제8호 안건설명자

2021년 정도까지요.

O O O 위원

한 개 정도 더요?

제8호 안건설명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은 사전연구로서 개념의 어떤 명확화라든가, 어떤 식으로 이 기준을 수립해야 될 것인지 이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설명자 퇴장.)

주심위원님 의견 주시죠.

O O O 위원

이게 연구의 결과가 어떤 것이 나올 것인가를 모르지만, 큰 틀에서 이 연구를 수행해 보겠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도출된 어떠한 뭐가 있을 텐데, 그거를 또 한 번 시범 적용해서, 그러니까 연구자가 해야 하는 그 목표가 상당히 뚜렷치 않아

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를 추진하겠다는 제안자의 의지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무슨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걱정하다고 판단하겠습니다.

○○○ 위원

제가 한번, 과연 안전기준선이라는 게 뭔지, 진짜 말 만들기, 옥상옥 같은 느낌이 들고요.

‘과연 안전재난에서 기준이라는 게 과연 있는 것이냐.’라는, 물론 이것은 담론과 철학적인 근본 그 들어가 볼 수 있는 거겠지만, 복지기준선이라는 것은 대충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비슷하게 안전기준선에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것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기준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서울시가 얼마나 재난에 취약한지 그런 거에 대한 탐색적 연구는 오케이, 그런데 뭔가 기준을 만들어놓고 ‘나이 65세 이상이 되면 빠른 차를 대절해서 준비시킨다.’ 이런 식의 안전기준선이란 과연 있을 수 있는가.

어느 지역은 취약하니까 더 어떻게 하자?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 처음 들어봐서, 안전기준선이라는 게 학문적으로 있는 용어인지,

○○○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안자의 의견을 들으니까 안전기준선이 복지기준선과 같이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연구의 결과로서는 안전기준선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강남구와 도봉구의 같은 재해에 대해서, 또 내지는 주변에 산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시민들이 느끼는 안전의 어떠한 욕구, 그러한 것을 갖다가 평등화하겠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는 어떠한 수준의 안전, 시민이, 이런 것을 갖다가 하겠다.’라는 논리로 말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과정에서 안전기준선이 복지기준선과 다른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위낙에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예요.

○○○ 위원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학술적 연구라면 좋겠으되, 정책연구로서는 아직 그 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나 관련법령에서 뭔가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이 나오고, 그것을 서울시 입장에서 다시 적용하는 정책연구가 돼야 될 텐데, 아직 시기적으로 선부르지 않나 하는,

○○○ 위원

예를 들면 안전취약계층이나 취약지역에 대한 어떤 대응방안연구라든지 그런 식의 연구는,

○○○ 위원

그거는 또 다른 얘기죠.

전혀 다르죠.

○○○ 위원

예, 얘기가 되지만, 안전기준선을 만들겠다?

○○○ 위원

그러네요.

제목과 같은 다른 해석을 해서 이게 걱정하다고 하는 것은 좀 힘들긴,

위원장(○○○ 위원)

저도 같은 태풍, 아까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같은 태풍이 왔는데, 지역별로 그 피해의 차이가 정말 다른 것을 확인하고, 왜 달랐는지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그런 의미라면 참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어떤 재난에 대해서, 70여 가지를 다 한번 해본다고 하니까, 그것도 똑같은 폭염이 왔는데 그 재난의 수위가 다 다르니까 그럴 때 지역별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다면 참 좋겠는데, 저희가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죠.

○○○ 위원

설명상 개념이 그 개념이 맞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개념 자체가요.

위 원 장(O O O 위원)

저 분은 그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
OOO 위원

예, 맞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여기에도 그렇게 안 여 쓰여 있고,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이요.
OOO 위원

설명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 개념이 맞는 것 같아요.

위 원 장(O O O 위원)

그러면 빨리 다음에 그렇게 다시 써서,
O O O 위원

1년간 숙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O O O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본래 출발했을 때는 복지기준선과 같은 개념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런 기준이라면, 결국은 ‘시설기준이라든가 시설설계기준이라든가 안전관리기준, 그다음에 재해율 같은 것들을 갖다가 경감하자, 목표치가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수준이 나온다면 이 연구는 무의미해요.

왜 그러냐면 안전에 있어서 사실 ‘어떤 최저선을 갖다가 결정한다.’라는 것은 시민의 오해만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 거기까지 도달했으니까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거는 내부적으로 갖고 있으면 되는 어떠한 기준이지, 그거를 시민들이 연구결과를 갖다가 이렇게 보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갖다가 굳이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 내용을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의도로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예방을 하기 위한 어떠한, 예방을 하기 위한 기준은 없거든요.

만일, 그런데 사정치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의 예방활동을 갖다가 해야 한다, 그다음에 예방활동의 근거로 대책을 갖다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마련을 해야 한다.’ 이런 식이라면 허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제목을 수정해 줘서도 되지도 않고, 다시 주심위원은 부적정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8호 안건 결론

위 원 장(O O O 위원)

예, 그러면 거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한 분 있어서 부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번입니다.

제1호 안건

하수관로 수리특성평가 및 수리분석방법 개선용역

위 원 장(O O O 위원)

물재생계획과이시죠?

제1호 안건설명자

예, 물재생계획과 하수계획팀장 OOO입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예, 앉으세요.

3분 내에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1호 안건설명

제1호 안건설명자

저희 안건은 하수관 수리특성 및 수리분석방법 개선용역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었고요.

과거에는 보통 하수도설계를 관로의 설계 강우 시에 침투 홍수량과 관로의 통수능을 비교해서 설계하는 방식이었는데, 2010년도에 대규모 침수가 발생한 이후에는, ‘실제 강우 시에 시간변화에 따라서 수량이나 수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거를 실제로 모의를 해가지고 설계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작년에 모형심혈을 하고, 그 해석방법을 설계방식을 최적화하는 학술용역을 하려고 수립을 했었는데, 작년에 심사결과 ‘모형 실험은 과업내용에서 배제하고, 그거를 해석모형으로 대체하고, 대신에 과업기간은 좀 늘리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당초 6억4,000인 사업계획을 3억4,000으로 줄이고요.

그다음에 사업기간은 10개월로 되어 있던 것을 14개월로 늘려가지고, 1차년도 사업을 금년도 예산 2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내년도에 2차년도 잔여사업이 1억4,000으로 추가로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심사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호 안건심의

위 원 장(O O O 위원)

주심위원님이 용역명 변경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셨어요.

제1호 안건설명자

예.

위 원 장(O O O 위원)

그래서 ‘스마트 하수관로 운영관리기반 조성연구로 바꾸면 어떠냐.’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1호 안건설명자

저희가 발주는 된 상태이기 때문,

위 원 장(O O O 위원)

계약은, 그거는 바꿀 수 없지만,

제1호 안건설명자

아마도 제 생각에는 부제 형태로 해서 나중에 추가로 집어넣거나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미 이게 입찰된 상태라서 제목, 공식적으로 제목을 고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그다음에 질문사항으로 ‘최근에 국지성호우 급증에 따른 취약지구 우선 조사지는 예를 들면 어디가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제1호 안건설명자

2010년, 12년에 실제로 침수가 발생했었던 지역은 우선적으로 침사조사 사업들을 먼저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 중에서는, 풍수해저감 기본계획에서 내수침수 위험지구들을 쪽 지정을 해놨습니다.

53개 지역을요.

그러니까 실제로 비가 안 와서 침수가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추가로 저희가 내수재해 위험지구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뭔지를 내년도부터 추가로 순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또 위원님들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설명자 퇴장.)

제1호 안건결론

위 원 장(O O O 위원)

이미 6억4,000이 3억4,000으로 조정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올 10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4개월 하기로 한 것 중에, 내년 분 1억4,000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OOO 위원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이신 거죠?

예, 그 내용을 포함해서 본 안건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본 안건은 적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예산과 주심위원님이 써주신 그런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적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제7호 안건

교통바우처(미래기술 활용) 제도 도입방안 연구

위 원 장(O O O 위원)

교통운영과죠?

제7호 안건설명자

안녕하세요.

교통운영과 OOO입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예, 3분 내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7호 안건설명

제7호 안건설명자

제가 말씀드릴 학술용역은 교통마우처 제도 도입방안 연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시교통본부 교통 분야에서는 그동안 보편적 복지인 대중교통 환승할인제도라든지, 아니면 신체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저상버스 도입이나 횡단보도 턱 낮춤,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지하철역의 확대설치 등의 시설적 차원에서의 복지를 많이 펼쳐왔습니다.

최근에 복지에 대한 개념이 단지 신체적 약자뿐만이 아닌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고, 저희 도시교통본부에서도 이런 변화를 받아서 신체적 약자뿐만 아니라, 교통취약자라든지 사회적 약자 분들도 가장 기본이 되는 교통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해 봐야겠다는 시도에서 출발하는 학술용역이고요.

저희 쪽에서는 ‘위낙 그 블록체인이라든지 다양한 기법들, 미래기술들을 활용한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사회적 약자들을 포함한 복지 차원에서의 교통복지제도를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이 연구용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7호 안건설명

위 원 장(O O O 위원)

감사합니다.

주심위원님.

O O O 위원

제도를 검토를 하시면서요, 실제 현장조사나 설문조사 이런 업무들이 수행이 됩니까?

제7호 안건설명자

예, 물론 포함돼서 진행돼야 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의 시도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고나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방 저희가 관할하는 도로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고들에 사망사고나 발생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런 분들이 남아있는 유가족이나 또 그렇게 돌아가셨던 분들의 이런 어떤 복지를 같이 교통시설이랑 저희랑 같이 연구해 보자 하는 출발이니까, ‘다 처음인 만큼 설문조사라든지 의견을 많이 받는, 수렴하는 과정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알겠습니다.

‘이 바우처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서울시가 교통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제도이냐, 과연 이게 서울시가 해도 괜찮겠느냐.’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성격이에요?

아니면 ‘이거는 무조건 가는 거고, 그랬을 때 이 제도를 어떻게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지 운영안을 한번 만들어보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7호 안건설명자

이 용역에서는 타당성 부분 담으려고 하고요.

그 ‘타당하다.’라는 전제 하에 가는 게 ‘시민들의 동의를 얻는 맞다.’라고 봐서 그런 부분,

○○○ 위원

일단 지금은 타당성용역이요?

제7호 안건설명자

예.

위 원 장(○○○ 위원)

제가, 예상되는 결론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요?

아직,

제7호 안건설명자

결론이라기보다,

위 원 장(○○○ 위원)

예상되는 방안.

제7호 안건설명자

저희가 이 생각까지 이르게 돼서 하고 싶은 부분은, 교통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몸이 불편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을버스를 거기까지 연결하는 것도 교통시설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분들의 이동권은 보장이 돼야, 이분들도 사회생활을 하시고 그런 편의를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저희는 더 궁극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전혀 불편함 없이 이동권이 보장되는 부분까지를 커버하고 싶은 게 목적인데, 이 시작단계이니 만큼 지금은 저희는 약간 그 범위를 정책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도 이 연구에 포함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그런 분들한테 바우처를 준다?

제7호 안건설명자

예,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위 원 장(O O O 위원)

궁극적으로는요.

O O O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타당성 성격의 그런 연구를 진행한다고 그런다면요, 바우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그 대상 계층이 어느 정도 연구를 통해서 그룹핑이 될 거고요.

규모는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 통해서 나오게 되면, 결국 서울시 입장에서는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날 거고요.

제7호 안건설명자

예.

O O O 위원

‘현재 그런 비용을 매년 투자를 했을 때 얻어지는 사회적 편익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냐.’라고는 판단이 돼야 사실 이게 ‘제도가 타당하다, 안 하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편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지금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가 사실 제가 좀 머릿속에 딱 안 잡혀서요.

제7호 안건설명자

이게 사람이 움직여야만 하고, 또 움직이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에 대

한 편익을 저희 담당자 입장에서든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끌어가야 되는지가 고민이긴 한데, 그 부분도 저희도 간과하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에서요.

○○○ 위원

혹시 천원택시 들어보셨어요, 천원택시요?

제7호 안전설명자

예, 사례조사하면서 봤습니다.

○○○ 위원

그렇죠?

시골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워낙 버스도, 서비스도 없고 하니까 택시비 2,000원만 내면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죠.

여기 도시잖아요. 그렇죠?

제7호 안전설명자

예.

○○○ 위원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의 밀집도 상당히 높고요. 그렇죠?

제7호 안전설명자

예.

○○○ 위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식으로서 이렇게 타당성을 얻을지가, 결론이 어떻게 날지가 사실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담보되지 않으면 시작하는 게 조심스럽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7호 안전설명자

그런데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저희 쪽에서 타당성이 다 담보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저희도 안전하지만, 그래도 저희 쪽 입장에서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성이나 편익에만 치우치지 않고 한번 논의나 연구를 해보고, 또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도 한번 물어보는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〇〇〇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제가 잘 모르는데, 바우처라고 대충 그러면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 주는 거란 말이죠.

제7호 안건설명자

예.

〇〇〇 위원

그래서 이만큼의 금액에 대해서는 쓰게끔 하는 건데, 그럼 교통복지바우처는 얼마를 줘야 되는 거죠?

누구한테는 얼마를 줘야 되고 누구한테는 얼마를 줘야 되고 과연 그게,

〇〇〇 위원

실비보상이죠, 실비보상이요.

〇〇〇 위원

그러니까 후에 보상하는 그런 방식은 모르겠으나, 바우처 방식이 얼마나 적당한지요.

위 원 장(〇〇〇 위원)

혹시 장애인들 그 있잖아요.

〇〇〇 위원

비슷하겠죠.

제7호 안건설명자

예.

〇〇〇 위원

기존에 있는 제도들이 있을 텐데요.

위 원 장(〇〇〇 위원)

장애인택시를 예를 들면 취약계층한테 확대한다든가,

〇〇〇 위원

그러니까요.

위 원 장(〇〇〇 위원)

그런 방식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여기에 포함돼서 연구가 돼야 되는 거겠지만,

○○○ 위원

굳이 네이밍을 바우처라는 말을 쓸 필요가 있느냐.

위 원 장(○○○ 위원)

예, 바우처로 이렇게 돈 비슷하게 주는 방식의 연구가 맞을 것인지요.
하여튼 잘 몰라서요.

○○○ 위원

미래기술 활용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제7호 안건설명자

저희가 그 내용을 굳이 괄호에 넣은 이유는,

○○○ 위원

요즘에 다 스마트가 용어가 대세여서요.

○○○ 위원

블록체인으로 해가지고 부정이 안 된다는 거, 부정이에요. 그렇죠?

제7호 안건설명자

그러니까 어디로 사용됐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이런 연구나 이런 거
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그동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지급이 만 원씩 됐을 때, 이게 정말 교통비로 사
용이 되었는지 다른 용도로 되었는지를 모르는 경우, 이제는 그런 부분
들이 많이 보완이 됐으니, 그런 기술까지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서 투명성을 담보해 보고자,

○○○ 위원

복지에서 유사한 거를 하고 교통본부에서 또 유사한 거를 하잖아요.
아까 장애인 관련해서 바우처도 하고 있고 콜 그것도 있죠.

제7호 안건설명자

예.

위 원 장(○○○ 위원)

콜벤.

○○○ 위원

그런데 ‘이거를 교통본부에서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가요?

제7호 안건설명자

저는 일단은 이게 너무 앞서간 고민이었는지 모르지만, 이 내용을 검토를 하면서 예산,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많이 검토를 봤는데, 찾아보았는데 저희 쪽에 스마트교통복지재단이라는 곳에서도 작게나마 그런 부분에서 교통과 관련된 복지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쪽에서 최근에는 의원 발의해서 계류 중에, 결론이 나지는 않았으나 ‘과태료나 범칙금 등 그런 곳으로 발생된 세입이 그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거나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의 명목으로 사용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작게나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거를 저희 쪽에서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나 이런 재원을 통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도시교통본부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000 위원

‘교통복지도 교통본부의 역할이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7호 안건설명자

예.

000 위원

예상되는 정책 대상자, 혹은 사전에 조사된 정책 대상자 이런 거 알 수 있나요?

제7호 안건설명자

실은 저는 교통운영과이고요.

저희 쪽에는 그 교통안전팀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팀에서 저희가 주로하고 있는 게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나 아니면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대해서 사망사고 발생지점을 개선, 시설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이거의 출발점은 그런 부분들이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부분 가장이고 생계를 책임지는 분들이 많으셔서가지고, 그렇게 남겨진 가족이나 학생들, 자녀들에 대한 어떤 혜택으로 생각한 게 바우처에서 출발을, 저희가 실은 그런 분들에 대한 대상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 과에 속한 정책 대상을 작게 찾은 것이고, 도시교통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자면, 장애인콜택시가 전역을,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서 나오는 못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 또 그다음에 제 바람이라면 더 나아가서는 많은 이동에 불편하시는 분들, 유모차를 꼭 끌어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다 확대되면 좋겠지만, 그거는 나아가서이고요.

저희 과에서는 그 사망사고 유가족 대상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일단은 사업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〇〇〇 위원

이게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요.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 저도 사실 바우처 이런 거 관심이 있는 분야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바우처를 한다면 장애인, 저소득층, 몸이 불편한 이런 사람들만 어떻게 보면 바우처의 타겟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앞으로 고령사회가 된다고 그러면 고령자들한테도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마시고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그러면, 차를 포기하게 만들면 그로 인한 리워드를 바우처를 사용을 하고, 이런 식의 것들을 저는 여기에서 충분히 많이 담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좀 그런 것까지,

제7호 안건설명자

그럴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원 장(〇〇〇 위원)

그런 거 한다고 하면 통과될 것 같은데요.

또 질문 없으시면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제7호 안건설명자

감사합니다.

(설명자 퇴장.)

위 원 장(〇〇〇 위원)

그러네요. 그렇죠?

고령사회에 대비한 이렇게 나가면, 하여튼 주심위원님은 걱정하다고 주셨고요.

부적정을 000 위원에서 주셨습니다.

의견,

000 위원A

아까 한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내용들이 대부분 도입방안 문제거든요.

저희들이 접근할 때는, 사회적인 여건은 이런 제도들이 실행될 만한 여건은 아닌데, 계속 도입방안만 연구해서는 조금 맞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부적정 의견을 냈거든요.

계속 교통약자 하는데, 교통복지의 초점은 교통약자라고 명제되어 있는 게 많은데, 교통의 목표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개선 아니면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장애인 각종 제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바우처를 얹어버리는 것은, 현재 제도를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도입방안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해서요.

위 원 장(0 0 0 위원)

0 0 0 위원께서는요?

000 위원

저는 이 용역명을 봐서 복지, 바우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장애인이나 고령자 이런 쪽으로 사실은 시각이 많이 가 있었는데, 교수님이나 아니면 아까 그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분다고 하면, 금액규모도 나중에 산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 정도 사업 실행해도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긍정적으로,

위 원 장(0 0 0 위원)

긍정적으로요?

000 위원

예.

위 원 장(0 0 0 위원)

예산은 좀 많다?

000 위원

예?

위 원 장(O O O 위원)

예산 2억5,500은 좀,

O O O 위원

그거는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다른 연구에 비해서요.

위 원 장(O O O 위원)

과다하다?

O O O 위원

10개월 똑같은데 내용이 없거든요.

무슨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 수만 늘려서 ‘전체예산을 80%를 인건비로 지급을 하겠다.’ 이 내용이거든요.

O O O 위원

조절 필요하다고,

O O O 위원

많이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O O O 위원

이거는 1억 미만으로도 될 것 같아요.

위 원 장(O O O 위원)

많이 조절할 필요,

O O O 위원

이거는 탐색적 연구잖아요, 사실이요.

당장 정책에 활용할 연구도 아닌 것 같고요.

O O O 위원

책상에서 어떤 똑똑하신 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O O O 위원

제가 보면 나중에 이거 연구 끝나고 가지고 있다가, 서울시의회나 이런 데서 자기들 정책에 대해서 그 자료로 활용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2억5,000까지 줄 필요가 있을까.

O O O 위원

차량을 줄이고, 꼭 필요할 때 차량을 쓰는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부합하는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7호 안건결론

위 원 장(O O O 위원)

의견 많이 주시면 것 같고요.

그러면 본 안건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부적정, 네 분이라,

OOO 위원

두 분도 투표권이 있습니다.

OOO 위원

부적정으로, 부적정이요.

위 원 장(O O O 위원)

예, 네 분이라 부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그다음에 6번입니다.

OOO 위원

이거 4개년 계획 그 사항인데요.

O O O 위원

얘기하시죠.

제6호 안건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시스템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

위 원 장(O O O 위원)

교통정책과에서 오셨죠?

제6호 안건설명자A

예.

위 원 장(O O O 위원)

한 3분 정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호 안건설명

제6호 안건설명자A

교통정책과 스마트교통팀장 이정기입니다.

용역명은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시스템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인데요.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7개월입니다.

용역비는 9,996만 원이 되겠고요.

계약방법은 일반경쟁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체가 심는 시 도심에서 자동차를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또 도심의 비싼 주차비도 감당이 어렵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 혼한 도심에서 근거리를 이동하는데,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이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크게 증진시킬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PM 이용으로 퍼스트마일 이동편의가 증진되며, 자가용 대비 대중교통 경쟁력이 증진되고 대중교통 이용이 늘 것이라고 예상되며, 교통수요뿐만 아니라 대기환경 개선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사용방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빌리티사업이 트렌드이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등의 도시에서도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일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이용이 허용되며, 국내에도 민간에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사업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공유PM이 서울시 도입 시 보행자 이용자 안전, 주차 문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지자체의 역할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정책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학술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과업내용입니다.

국내외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시스템 관련 사례조사 및 분석이고요.

위 원 장(O O O 위원)

과업내용은 다 읽어보셨으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제6호 안건설명자A

그리고 활용계획은 해외에서,

위 원 장(O O O 위원)

활용계획만, 예.

제6호 안건설명자A

해외에서 부각되었던 시민 안전, 통행불편, 주차문제 등을 겪지 않고 안전하고 유용한 수단으로 공유PM이 정착되도록, 공유플랫폼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추진, 법 제도적 개선을 위해 연구내용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제6호 안건심의

위 원 장(O O O 위원)

주심위원님.

O O O 위원

제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하시겠다고 하는 게 그 따름이처럼 이게 어떤 스테이션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퍼스널 모빌리티를 놓고서 이렇게 대여하고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는 용역인 거죠?

제6호 안건설명자A

예, 그렇습니다.

제6호 안건설명자B

공영도 검토를 하고요.

일단은 그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중점으로,

O O O 위원

어찌됐건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들을 하는 거를 검토하신다는 거잖아요?

제6호 안건설명자A

예.

O O O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에 다들 좀, 가장 대표적인 것 키보드 같은 것, 전동키보드 같은 것들은 우리가 아무 데서나 사실은 탈 수 없게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6호 안건설명자A

지금 현재는 자동차도로만 탈 수 있기 때문에,

○○○ 위원

예, 보도에서 절대 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따릉이하고 약간 다른 건데, 이거를 시스템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이거를 도로에서 자동차하고 부딪혀갖고 이거를 타는 것들 자체가, 그런 받아들일 수 있을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수용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지가 한번 먼저 여기에서도 같이 검토가 될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제6호 안건설명자A

그래서 국회에서 의원발의로요, 도로교통법을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PM이 자전거도로로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전거도로가 없는 데는 제동장치라든가 이런 기능이 뛰어난 것은 차도로 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라든가, 규모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보도로 다니는 이런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그러면 그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하시면 너무 늦나요?

아니면,

제6호 안건설명자A

그래서 조금,

○○○ 위원

그게 언제 통과될지 모르고, 얼마나 계류되어 있을지 사실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제6호 안건설명자A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자꾸 보도가 되고 이용자가 또 많이 늘어나고 안전 문제도 거론되고 해서요, 법 개정이 하반기 중에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것 타려면 면허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이런 건데,

위 원 장(O O O 위원)

이것도 안전모 써야 되나요?

O O O 위원

당연히 써야 됩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안전모 어떻게 해요?

O O O 위원

이거 당연히 써야 됩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따릉이도 안전모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요.

제6호 안건설명자B

개정안에는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는,

O O O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꾸게 돼야 이게,

제6호 안건설명자B

개정이 돼야지,

O O O 위원

예, 어느 정도 우리가 검토를 해볼 상황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6호 안건설명자A

이미 법이 개정되어 버리면 늦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O O O 위원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법 개정 가능성요?

의원발의인가요, 정부입법인가요?

제6호 안건설명자A

두 분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제6호 안건설명자B

의원발의,

제6호 안건설명자A

예, 국회의원,

제6호 안건설명자B

행안부에서 같이 안을 만들어서,

○○○ 위원

생각하고 계시는, 있는 그 저기 퍼스널 모빌리티가 대상이 어떤 거예요?

킵보드는 아니고, 전동킵보드는 아닌 것 같고 휴대하기가, 여기에 설명한 것 보면 휴대하면 가지고 자기가 개인용으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전거처럼 휴대하기가, 건물 내에 들고 들어가기, 아니면 무게가 중량이 많이 나간다는 거 이런 것들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퍼스널 모빌리티가 현재 뭐죠?

그렇다고 해서 이륜차는 절대 아닐 것이고요.

오토바이는 도로로 다녀야 하니까요.

어떤 거를 생각하고 계세요?

제6호 안건설명자B

PM 종류 중에서,

○○○ 위원

전동킵보드입니까?

제6호 안건설명자B

대중화되고 있는 거는 전동킵보드이고,

○○○ 위원

전동 ���보드죠.

제6호 안건설명자B

전동킵보드만 해도 대중교통에 타고 그걸 다니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 원 장(○○○ 위원)

그다음에 휠 동그란 거 이렇게 타는 거,

제6호 안건설명자A

전동휠.

위 원 장(○○○ 위원)

전동휠, 그렇죠?

젊은 애들 재미있기는 할 텐데, 참.

○ ○ ○ 위원

이거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죠?

시급하게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커지나요?

제6호 안건설명자A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마련을 해서,

○ ○ ○ 위원

아니, 언제든지 그런 건 하면 좋죠.

선도적으로 해도 좋고요.

제6호 안건설명자B

지금 현재 그런 정부의 그 개입 없이 추진을 했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영을 전면 금지한 사례가 있는데, 그때 부각됐던 것이 보행자들 통행을 방해하고, 그다음에 불법으로 도로에 주차를 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든지 이런 문제,

○ ○ ○ 위원

서울에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제6호 안건설명자B

도로교통법 개정이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 ○ ○ 위원

할 것이다?

제6호 안건설명자B

예.

○ ○ ○ 위원

‘그래서 그거를 공유형으로 해서 그 대책으로 문제를 해소시키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제6호 안건설명자A

시범운영을 하면서,

○ ○ ○ 위원

공유를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위 원 장(○ ○ ○ 위원)

공유하면 많이 이용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저는 사고걱정이 사실은 제일, 많이 이용할까

봐 걱정이예요.

○○○ 위원

오히려 놀이터에서 그런 거 좀 많이,

위원장(○○○ 위원)

예, 그런 면이 좀 있어서, 하여튼 그거는 단순한 의견일 뿐이고 질문
있으면 또 질문하시죠.

위원님들 질문이 끝났으니까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설명자 퇴장.)

제6호 안건결론

위원장(○○○ 위원)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용역은 주심위원님이 살짝 부적정 쪽으로,

○○○ 위원

많이 갔습니다.

위원장(○○○ 위원)

많이 가셨나요?

그러면 바로 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위원장(○○○ 위원)

본 안건은 부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위원장(○○○ 위원)

9번인가요?

서울시관계자

17번이요.

위원장(○○○ 위원)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뒤로는 조금, 17번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정책과.

제17호 안건

서울시 청소년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제17호 안건설명자

안녕하세요.

청소년정책관 담당 O O O 입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앉으세요.

간단하게 3분 내로 설명해 주세요.

필요성, 왜 해야 되는지 중심으로요.

내용은 말고요.

제17호 안건설명

제17호 안건설명자

예.

저희 부서에서 시립청소년시설로 총 6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도 4개소를 건립하고 있고, 거의 60개에 달하는 시설을 민간위탁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단체가 청소년활동진흥법상에 청소년단체로만 한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청소년단체 풀이 좁고, 또 다른 타 시도에는 재단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고 직영으로 하는 사례도 일부 있는데, 우리 시에는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만 운영하고 있고, 위탁시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상의 문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영이나 재단, 그다음에 자치구의 일부 위임사무라든가 모든 사례를 분석을 해서, 우리 서울시의 단일 시 단위에서 정말 많은 시설이거든요, 60개 시설이면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지 한번 연구해 보고자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17호 안건심의

위 원 장(O O O 위원)

예산담당관에서 의견을, 질문을 해주시죠.

OOO 위원B

청소년정책과 안에 청소년시설평가팀 있잖아요.

제17호 안건설명자

예, 이번에 8월27일 자로 생겼습니다.

OOO 위원B

여기에서 평가팀을 만든 이유가 ‘조금 더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이런 의미인데, 이 팀이 생기자마자 바로 이렇게 재단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제17호 안전설명자

물론 그 민간위탁 법인단체에 대한 지도점검도 있지만, 사실 시설평가팀은 그게 심지어 재단이든지 민간위탁이든 자치구 위임이든, 그 시설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리운영주체가 누구든 간에, 관리지도감독의 의무는 저희 과에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총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설평가팀의 필요성과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OOO 위원

운영효율화라고 하는 게 핵심키워드인데요.

제17호 안전설명자

예.

OOO 위원

직영, 재단, 민간위탁, 그래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계세요?

제17호 안전설명자

사실은 재단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재단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추진이 좀 어려웠던 거고, 직영도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거점별로 일부 중심시설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전환을 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OOO 위원

이 부분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거 옛날에 구에도 취보고 직영도 해보고 다 해보셨잖아요.

제17호 안전설명자

직영은 아니고,

OOO 위원

그 과정 속에서 결과물의 분석을 다 하셨을 텐데 굳이 민간위탁, 직영, 재단 이거를 왜 용역으로서 한 1년 정도 가져가시는 거죠?

제17호 안전설명자

이게 과거하고 변화가 있는 게 일단 시설이 계속해서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자치구에 위임할 당시에는 그때는 법에서 자치구에서 공단에 위탁이 가능해서, 사실상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청소년단체만 위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현재의 변화도 있고,

OOO 위원

OOO 위원에서 ‘민간위탁을 구 관리로 이관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한번 검토요청을 했었는데, 그때는 명확하게 이거는 직영,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운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거든요.

제17호 안건설명자

그때는 사실,

OOO 위원

얼마 안 됐어요.

제17호 안건설명자

이런,

OOO 위원

그런데 그거를 명확하게 용역으로서 1년 정도 해서, 시의회에서 혹시 자꾸 이런 문제제기하니까 용역하는 거 아니에요?

제17호 안건설명자

그런데 이게 그냥 저희 과 단일 개인 과장님이랑 국장의 의견으로 이거를 그냥 구에다 다 넘겨버리고, 그냥 우리가 직접 갖고 있고 이거를 단순히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게, 그때 당시에 구에다가 저희가 위임을 했을 때 어떤 구에서는 좋아하는 구도 있고 싫어하는 구도 있고, 또 구에 갔을 때 장·단점도 있거든요.

OOO 위원

그렇죠.

그거는 개별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하면 되잖아요.

제17호 안건설명자

그런데 구에 내려가는 것만이 아니라 또 재단의 문제도 있고, 또 권역별로 조금 더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를 조금 더 종합적으로는 저희 부서에서는 자체적인 의견을 갖고 좀 이렇게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싶었습니다.

000 위원

이상입니다.

위 원 장(0 0 0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운영은 청소년정책과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경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딱 방향을 가지고 재단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위탁을 해야 된다. 어느 지역은 위탁하고 어느 지역은 직영하자.’ 이렇게 내부에서 결론이 날 사항은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17호 안전설명자

이게,

위 원 장(0 0 0 위원)

예, 알았습니다.

0 0 0 위원

한 가지만 더, 그럼 제한경쟁으로 하신 이유가 뭔가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정말 좋은 연구팀이 들어와서 적절한 요구를 하셔야지,

0 0 0 위원

객관적으로요.

0 0 0 위원

예, 객관적, 좀 그래야지 쓰실 수가 있을 텐데, 제한경쟁으로 주셨잖아요.

제17호 안전설명자

단순한 시설운영컨설팅이라기보다, 어쨌든 청소년시설이고 위탁시설이고 시립시설이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청소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에서,

0 0 0 위원

이런 부분이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가 할 수 있는 분야인가요?

이거는 관리에 대한 분야인데요.

제17호 안전설명자

청소년,

000 위원

예를 들자면 서울연구원의 의뢰해서 단기과제로 빨리 할 수도 있잖아요, 정 급하면요.

제17호 안건설명자

단기과제요?

저희가 운영효율화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과제 안에 사실은 저희 욕심이기도 한데, ‘지역별로 청소년수요나 이런 거를 해서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적정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에 대한 그것도 이 안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무한정 시설이 늘어나기만 하니까, 이 권역에는 이 정도의 시설만 필요한데, 사실은 계속 연차적으로 과다하게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것 아니냐. 여기는 더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분석도 들어가 있습니다.

000 위원

이게 5월 달, 8월 달 수시학술 심의에 올라왔다가 두 번 안 됐어요.

제7호 안건설명자

예.

000 위원

그러고 나서 다른 방법은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제17호 안건설명자

그 사이에, 저희는 8월에는 수시로 될 줄 알았거든요.

000 위원

그런데 무모하게 세 번째 올리고 계신데,

위 원 장(O O O 위원)

그렇죠.

똑같은 내용으로요.

000 위원

그것도 내년,

제17호 안건설명자

그때 수시에서 마지막에 떨어졌을 때는, 이거 내년에 정식예산으로 편

성해서 용역하면 좋겠다고 얘기가 나와서,

000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의 자체과제나 수탁과제나 이런 거는 고민 안 해보셨나요?

이거 내년 10월까지, 왜 10월까지예요?

하면 3개월 안에 끝낼 수도 있는 건데요.

제17호 안건설명자

이 연구용역 내용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단순히 비교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반의 청소년 수요나 시설분석을 해서, 권역별로 적정분포를 그것도 이 안에서 포함 해내고 싶었기 때문에, 용역과제가 조금 더 있는 면은 있습니다.

000 위원

서울시에서 예를 들면 종로구의 어느 지역은 민간위탁이 맞고, 노원구의 어느 지역은 직영이 맞고, 이런 게 말이 안 됩니까?

말씀하신 거 제가 이해를,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요.

제17호 안건설명자

그러니까 자치구, 꼭 하나만, 예를 들어서 재단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재단의 일시에 모든 시설을 다 맡아서 하기는 어려울 거고, 아마 재단이나 시나 어느 정도, 그다음에 자치구까지 포함해가지고 어떤 거점기관은 시나 시에서 직접 관리,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거나 아니면 자치구에 이런 사무들을 위임을 줄 수 있거나, 이것을 좀 체계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00 위원

저는 그거보다는 이거 상관없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얼마만큼의 감독과 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위탁하느냐, 직영하느냐.' 저는 개인적인 학자로서 생각입니다마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찌 될지 잘 모르겠지만요.

000 위원

장차 이 과제가 되고 나면...됐다 치고요.

그다음에 정책이나 혹은 후속과제나 이런 거는 어떤 거를 예상을 하세요?

제17호 안건설명자

그 장기적으로는 재단설립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사무에 대해서는 사실 일부는 자치구 위임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 판단하기는 조금,

○○○ 위원

그 타당성이 여기 과제에서 나오나요?

제17호 안건설명자

그런 것을 같이 껴서 한번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 위원

너무나 하고 싶은 게 많고 이거는 기간이나 비용은 많지 않고, 담당 과에서 그럼 용역기관에 계속 푸시를 해서 얻어내시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여쭙본 거예요.

‘후속과제로 혹은 무슨 정책으로 계획하고 계신 거가 있고, 그거 때문에 이 과제를 지금 하지 않을 수 없다, 해야 된다, 시급성이 있다.’ 이런 거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쭙보는 거예요.

제17호 안건설명자

저희 과에서는 아무튼 운영효율화방안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앞으로는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틀을 잡고 싶고, 이 용역을 통해서 좀 많은 통계나 데이터들, 그다음에 같이 연구에 참여를 하면, 당연히 다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재단을 하지만 지금은 자치구에 일부를 위임하고 우리가 권역별로 어떻게 하겠다.’ 이거를 그 틀을 잡는 것입니다.

○○○ 위원

그거를 과에서 결정하면 되는 사항처럼 보여요, 정책결정하는.

위원장(○○○ 위원)

알았습니다.

제17호 안건설명자

너무 규모가 커서요.

위원장(○○○ 위원)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하고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제17호 안건설명자

고맙습니다.

(설명자 퇴장.)

위 원 장(O O O 위원)

주심위원님이 안 계시고 걱정, 보완,

O O O 위원

있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여기 있구나.

죄송합니다.

가신 줄 알았습니다.

O O O 위원

그냥 글썩요, 헛갈리네요.

위 원 장(O O O 위원)

헛갈리십니까?

O O O 위원

예.

그냥 원래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정교한 연구를 해서 관리방안을 한다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의도가 분명치 않습니다.

제17호 안건결론

위 원 장(O O O 위원)

그러면 바로, 이거 너무, 거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세 사람이기 때문에 부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서울시관계자

9번서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7번이죠?

간 사(시정연구팀장)

9번.

위 원 장(O O O 위원)

7번 했죠.

9번으로 가야 되죠?

서울시관계자

예.

위 원 장(O O O 위원)

조금 진도를 뽑아야 됩니다.

제9호 안건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플랜 수립 연구용역

위 원 장(O O O 위원)

문화정책과이시죠?

제9호 안건설명자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장 OOO입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간단하게 필요성, 그다음에 왜 해야 되는지 중심으로, 내용은 빼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호 안건설명

제9호 안건설명자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플랜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서울은 서울아레나, 노들섬 뮤직파크,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 등 다양한 음악인프라를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팝이 글로벌화 되어 있고 홍대 인디음악이 활성화되고, 이태원 EDM 등 해가지고 글로벌 음악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와 그거는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안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장르별 음악거점을 조성하고 활성화를 해서, 서울을 음악도시로 브랜드화하기 위한 전략과제를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주요과업내용은 서울시 음악환경, 자원, 그리고 인프라 현황진단, 업계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 분석이 되고요.

그리고 국내외 음악산업 분야, 음악도시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시사점 도출, 글로벌 음악도시 비전설정, 기본방향, 핵심사업 제시 등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의 핵심사업별 정책 및 실행과제 제시,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의 행보방안, 실행추진체계 로드맵 제시 이 정도가 되겠고요.

연구결과는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플랜에 직접 적용하고, 사업예산의 반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9호 안건심의

위 원 장(O O O 위원)

감사합니다.

주심위원님.

O O O 위원

전반적으로 서울을 글로벌 음악도시로 만들겠다는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과연 저는 묻고 싶은 게, 근본적으로 묻고 싶은 게 서울시민이 즐겁으로써 나오는 어떤 음악의 장르라든지 그런 특수성하고 한국적인, 서울적인 음악이 만들어지지 않고, 단순히 글로벌한 음악도시를 만들겠다는 그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하고 괴리되어 있는 음악이 과연 세계적이고 글로벌하게 될 수 있고, 음악도시로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이 용역보고서에는 전혀 안 담겨있거든요.

그거를 제일 듣고 싶은 거였습니다, 사실은 그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순히 어디입니까, ‘신촌에 그쪽이 핫플레이스이니까 지원해 준다.’ 그럼 그게 글로벌 음악도시가 될까요?

제9호 안건설명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장르별로 아까 말씀하신 신촌이라든가 홍대 앞, 이태원, 강남 이렇게 거점별로, 장르별로 기본 그런 형성이 되어 상황입니다.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서울이라는 정체성과 결합해서, 음악도시

라는 브랜드로, 서울을 음악도시의 브랜드로 하는 그런 전략을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

그렇다고 서울이 빈이나 이런 데 같이, 뉴욕이나 피츠버그나 이런 데 같이 글로벌 음악도시가 될 수 있을까요?

제9호 안건설명자

충분히, 자원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저는 궁금한 것은 ‘결국 저변확대가 되지 않는 어떤 탐다운 방식의 정책이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었어요.

제9호 안건설명자

용역을 추진하면서 이 용역하고 병행해서 저희가 각 분야별, 음악 장르별 전문가들하고 시스템이라든가 인프라 이쪽의 전문가들, 그래서 각 분야별 분과, 한 다섯 개 분과로 해서 전문가문단을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월 정도에 구성을 해서, 용역과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글쎄요, 인사동 보면 판소리, 국악 다 죽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 없이 단순히 힙합, 케이팝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이 글로벌 음악도시다?

저는 그 지속가능성에서 걱정이 되고요.

제9호 안건설명자

국악 분야도 조금 용역에 들어가 있고요.

○○○ 위원

있는 거는 제가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저변확대가 되어서, 뭔가 시민과의 어떤 그런 것 속에서 같이 가야만 이게 지속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세계

화, 글로벌화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계획만 짜갖고 플랜을 만든다고 그래서 비전을 만드는 게 과연 가능할까.

결국 각론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게 빈곤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나머지 보완사항은 몇 가지, 자문회의를 두 번밖에 계획하고 있지 않고, 또 아까 제가 주로 이야기했던 것이 수요적인 측면은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궁극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그런 계획들이 별로 안 담겨있거든요, 제가 이거 읽어보니까요.

그 정도였습니다.

○○○ 위원

이 과제가 정책기본구상인가요, 아니면 기본계획 수립인가요, 아니면 실행계획 수립인가요?

어디에 속해요?

제9호 안건설명자

실행계획까지 같이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전략과제를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그거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실행계획까지 했습니다.

○○○ 위원

내용을 보면, 그다음에 관련한 과제도 있습니다마는, 시립국악센터 이런 거는 다음 과제에, 다른 과제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내용 쪽 봐도 각 장르별로, 음악 장르별로 다 모아서 이렇게 한 것 보니까, ‘정책의 기본적인 사안들을 정책과이니까 총괄해서 뭐를 장기적으로 이렇게 틀을 맞추고 균형을 잡겠다.’ 이런 걸로 저는 읽었는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그게 아니라 ‘당장의 인디들 이태원에 있고 홍대에 있고 어디 있으니까, 애들 제대로 활성화시켜서 뭔가 빛나게 해보겠다, 한류 케이팝처럼.’

그래서 제가 혼란스러워서 여쭙본 거예요.

제9호 안건설명자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도 전략과제를 먼저 개발을 하고, 거기에 따른 분야별 실행과제를 같이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 위원

저도 간단하게, 글로벌 음악도시 어디가 유명하죠?

제9호 안건설명자

음악도시,

○○○ 위원

사례를 한번 좀,

제9호 안건설명자

빈이라든가,

○○○ 위원

빈?

제9호 안건설명자

런던,

○○○ 위원

런던?

위원장(○○○ 위원)

잘츠부르크 이런 데도 유명하겠죠.

○○○ 위원

잘츠부르크요?

사실은 솔직히 저는 ‘글로벌 음악도시 사례를 들어주세요.’ 하면 잘 자신 있게 ‘어느 도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버풀, 비틀즈 이렇게요.

그래서 드릴 말씀은, 서울이 왜 글로벌 음악도시가 돼야 되는지가 아직 까지 저는 와 닿지는 않고요.

다른 글로벌 음악도시를 통해가지고, 그 지역의 어떤 글로벌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키운 사례들이 좀 제가 일반인으로서 확 오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 수요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례를 통해서 글로벌 음악도시화된 도시에서 과연 정책적인 수요죠.

‘정책을 통해서 그것이 돼야 되는지를 통해서, 과연 서울시가 시의 정책으로 글로벌 음악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정책적 수요가 있고, 그거를 위한 학술적 연구가 필요하다, 라는 것들이 설득이 돼야지 이 과제가

조금 더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 질문 드렸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설명자 퇴장.)

위 원 장(O O O 위원)

위원님들, 의견과 질문을 구분해서,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심위원님.

O O O 위원

저는 부적절적으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 자체가 뭐냐 하면, 세계적 음악도시는 결국 주민들이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정부가, 서울시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정말 전시형 행정으로 가는 거다, 전형적인 전시형.

박정희 시대나 생각했을 그런 얘기인 것 같아서, 저는 반대에 넣었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이미 홍대 앞에 그 버스킹 하는 거 있잖아요.

O O O 위원

그러니까 안 보이게 지원을 해주는 거죠.

위 원 장(O O O 위원)

아니요, 버스킹을 하기 위해서 이미 가로시설물들 다 다시 바꾸는 계획을 이미 해서 아마 공사까지 할 걸요.

그래가지고 동글동글하게 다 소형 그거를 만든대요.

그래서 그거 안 할 때는 어떻게 하려고 제가 그랬는데요.

예, 의견이요.

O O O 위원

이 사실은 서울시에서 음악과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거 수립한 적이 없고요.

제가 문화융합경제과장을 했었는데, 대중예술업 등록업무만 서울시 유일하게 음악 관련된 거 했지, 나머지는 공연장 짓고 이런 거였습니다.

노들섬 오페라하우스도 그러다가 넘어갔고요.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못 했던 것이고, 그렇다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필요하다?

O O O 위원

예, ‘그 관련된 부분은 창동 아레나, 개별사업으로서만 이렇게 고민이 됐었던 거고, 이거를 서로 전체적으로 묶어주고 인디밴드가 됐든 케이팝이 됐든 아니면 전통 국악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슈가 하나 있고요.

이게 그래서 민선 7기의 공약이기도 하고, 4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이게 안 되게 되면 어떤 고민을 또 추가로 하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용역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고민거리들이 담겨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O O O 위원

그런데 마치 이게 수출형 어떤 사업식의 음악도시를 만들겠다.

저는 근본적으로 반대입니다.

너무도 보여주기에요.

O O O 위원

이게 음악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런 목적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관광하고 많이 연계를 시키려고 하는,

O O O 위원

그거인 것 같아요.

O O O 위원

그런 개념이 여기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O O O 위원

저는 도시브랜드가,

O O O 위원

제목은 글로벌 음악도시이지만, 사실 그 음악이 아주 중심인 이런 것보다는 한류를 많이 좋아라 하니 뭔가 특화된, 거점마다 특화된 것들을

조금 더 잘 발전시켜서, 외국인들이 관광 오면 연계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조금,

○○○ 위원

그런데요, 관이 여기에 지나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망합니다.

위 원 장(○○○ 위원)

일반적으로 그렇죠.

○○○ 위원

케이팝이 서울 건가요?

○○○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 위원

케이팝의 성질상 케이팝은 서울 거죠?

○○○ 위원

그렇죠, 성지죠.

○○○ 위원

그러면 성지 하나 만들어주죠.

위 원 장(○○○ 위원)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 위원

다들 케이팝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을 가서 봐야 한다.

○○○ 위원

그런 식으로, 차라리 그렇게 썼으면,

○○○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 위원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나았죠.

○○○ 위원

확실하게 본고장인, 케이팝의 본고장인 그 사람들이 살고 그 사람들이
누리는 어떠한 생활 이거를 봐야지 우리 케이팝을 인식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모두 오면 좋잖아요.

○○○ 위원

예술인실태조사 이런 거는 지금 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연 케이팝이든 국악이든 어떤 단체와 어떤 예술인들이 어떤 활동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체를 관심이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관에서요.

그거에 대한 조사나 그거를 분석을 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관이 주도적으로 가면 깨진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도 홍대 문화지구 지정하려고 하다 그때 용역을 안 했거든요.

하여튼 그런데 그럼 관이 해야 될 역할과 민간이 해야 될 역할도 사실 정리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원

그런데 그거 안 담겨 있어요.

○○○ 위원

제목이 신문기사 헤드라인처럼 너무 세세하게 잡히는 바람에, 정작 하고자 하는 정책적 그런 내용들이 오히려 묻히고,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말씀 들으니까 서울시에서 음악 관련한 종합적인 정책이 없었다고 하는 게 사실 놀라운 얘기에요.

○○○ 위원

아직 4개년 계획이 확정돼서 발표되지도 않은 시점이어서, 아마 고민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9호 안건결론

위원장(○○○ 위원)

그럼 그런 고민을 다 보완사항에 넣는다고 전제하고, 그러면 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본 안건은 적정한 것으로 심의되었고요.

용역비가 일부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고요.

말씀해 주신, 그다음에 수기사항에 적혀있는 모든 내용들을 담아서 조금 새로운 내용으로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 10번입니다.

간 사(시정연구팀장)

지금까지 10건 처리하셨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10건, 반도 안 됐습니다.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질문과 의견을 잘 구분해서서.

서울시관계자

10번, 11번 같이 발표, 10번, 11번 같이,

위 원 장(O O O 위원)

예, 10번하고 11번하고요.

서울시관계자

예.

제10호 안건

권역별 서울도서관 분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제11호 안건

서울숲 명품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제10,11호 안건설명자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담당 OOO입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필요성 중심으로 왜 해야 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중심, 내용은 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10,11호 안건설명

제10,11호 안건설명자

예, 알겠습니다.

안건번호 10번 권역별 서울도서관 분관 건립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필
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서울도서관 타당성 용역추진은, 연초에 서울도서관 분관 건립
관련해가지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8년7월20일부터 12월19일까지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
진 중에 있고, 연세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에서 분관 건립에 대해서 용

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내용은 서울 전역에 다섯 개 권역에 분관을 설립하는 것으로서 추진되고 있고, 이 용역이 수립이 되면 내년도에 권역별 서울도서관 분관 타당성조사 용역추진계획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두 용역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끝나자마자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입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두 번째 거요.

서울숲 명품도서관이요.

제10,11호 안건설명자

안건번호 11번 명품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숲 명품도서관은 18년5월 달에 시장님 공약발표에 따라서 실시한 내용입니다.

명품도서관은 서울숲 내에 명품도서관을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가 명품숲 도서관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제안을 했는데요.

현재 명품숲 도서관이 도시공간개선단, 그리고 공원녹지정책과에서 같이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행정2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개최한 결과,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주 업무를 맡고,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관련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걸로 마련이 됐고, 서울도서관은 서울 명품숲 도서관의 건립에 필요한 도서관의 운영방법, 그리고 콘셉트, 그런 거를 제안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업무가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당성조사 용역은 죄송한데, 타당성조사 용역이 아니라 서울숲 명품도서관의 기초조사 용역으로 조금 변경을 하려고 그러합니다.

왜 그러냐면, 타당성조사용역은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한꺼번에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 업무가 나누어짐에 따라서, 서울숲 명품도서관에 어떤 도서관이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를 하는 게 아니라 명품도서관에서 어떤 도서관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조사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10, 11호 안건심의

위 원 장(O O O 위원)

주심위원님.

O O O 위원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서울숲 명품도서관이 이미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10,11호 안건설명자

계속 포럼을 진행 중에 있고, 현재는 서울숲 도서관이 세 개의 부지 중에 타당한 부지가 어느 것인지 서울숲하고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선정이 되면, 우리 도서관에서는 실질적으로 콘셉트, 소프트웨어만 마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TF팀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 거네요?

제10,11호 안건설명자

예, 맞습니다.

O O O 위원

그러면 이 과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O O O 위원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제10,11호 안건설명자

타당성조사 용역을 빼고, 이 건립타당성 유·무가 아니라 저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O O O 위원

그러니까 여기 11번에 연구내용 자체가,

제10,11호 안건설명자

또 변경이 되는,

O O O 위원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대체돼야 하니까, 그러면 ‘새로운 용역을 하는 거지, 서울숲 명품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는 기 조사하고 있는 다른 거와 연관되어서 불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제10,11호 안건설명자

아닙니다.

타당성조사 내용에는 소프트웨어적인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한지 안 한지 여부의 과업내용만 제외만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 ○ ○ 위원

과업내용을 빼버리면 연구가 아니죠.

위 원 장(○ ○ ○ 위원)

‘기초조사 용역도 있고 타당성도 있는데,

제10,11호 안건설명자

예, 기초조사 용역,

위 원 장(○ ○ ○ 위원)

타당성 빼고 운영과 관련된,

제10,11호 안건설명자

기초조사에 대한,

위 원 장(○ ○ ○ 위원)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기초조사 용역 쪽으로 집중해서 조정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제10,11호 안건설명자

예, 그렇게 하려고요.

○ ○ ○ 위원

명품도서관이 서울숲에 안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 ○ ○ 위원

‘과업내용에는 기초조사는 없었다.’ 이런 이야기죠.

위 원 장(○ ○ ○ 위원)

없어요?

○ ○ ○ 위원

예.

제10,11호 안건설명자

지금 현재,

○ ○ ○ 위원

새로운 걸 기초조사로 바뀌서 하겠다는 거죠.

제10,11호 안건설명자

서울숲의 명품도서관이 들어가는 거는 시기의 조절만 있을 뿐이지, 지금 현재는 거의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OOO 위원

부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제10,11호 안건설명자

예, 부지 그거에 대해서만 회의 중에 있습니다.

OOO 위원

타당성은 어느 정도 다 정해졌다고 하는 거잖아요.

OOO 위원

정책은 결정이 됐다는,

OOO 위원

장소를 결정만 되면 바로 갈 수 있게끔 이거 하시겠다는 건데요.

OOO 위원

서울시에서 서울숲이 어디 어디 있죠?

제10,11호 안건설명자

아니 서울숲은 뚝섬에 있는,

OOO 위원

뚝섬 하나 있는 것,

제10,11호 안건설명자

예, 그걸 말하는,

OOO 위원

저쪽 북쪽에 있는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10,11호 안건설명자

예, 뚝섬에 있는,

OOO 위원

북서울 꿈의 숲이 아니고,

위원장(O O O 위원)

북서울 꿈의 숲 말고요.

마장동에 있는,

OOO 위원

서울숲 일대에 삼포레미콘이 나갑니다.

나가기로 되어 있고, 승마장도 다른 시설로 개발해야 될 예정이어서, 그 중에 어느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거고, 이 부분 국비를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제10,11호 안전설명자

지금 현재로서는 건립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는 11월말까지 포럼에서 부지선정을 다 마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건립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국비, 시비가 필요한데, 국비로 했을 때는 또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그 여부, 국비를 받고 할 것이냐, 아니면 시비로 다 갈 것이냐,

OOO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립 타당성조사는 도공단에서 언제 하나요?

제10,11호 안전설명자

지금,

OOO 위원

하고 있어요?

제10,11호 안전설명자

죄송한데 용역은 추진 중에 있는데, 정확한 용역명을 제가,

OOO 위원

도서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은 하고 있다고요?

제10,11호 안전설명자

아니요, 서울숲을 어떻게 할 것인가.

OOO 위원

아니 도서관 타당성 조사로 왔다가, 그쪽에서 하고 있으니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10,11호 안전설명자

예.

OOO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고 있어요, 건립타당성 조사를 용역어요?

제10,11호 안건설명자

그거는 이후에,

OOO 위원

그 타당성이 먼저 나와야 그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제10,11호 안건설명자

그쪽에서는 서울숲 안에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숲 전체 콘셉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용역을 추진하는 건데, 그 용역에 서울도서관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다른 시설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적인 용역을 추진하는 거지, 서울도서관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간 사(시정연구팀장)

도공단에서 추진하는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제10,11호 안건설명자

그거는 푸른국에서 공원녹지정책과에서,

OOO 위원

자꾸 다른 얘기하시면 안 되고, 도서관이 지어지려면 법정절차로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투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제10,11호 안건설명자

예.

OOO 위원

그거 누가 하고 있냐고요.

제10,11호 안건설명자

그거는 도시,

OOO 위원

그게 선행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선행이 돼야 되겠죠?

지을지, 말지, 어떻게 지을지, 그래서 그거를 투자심사를 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쪽 가야 되잖아요.

제10,11호 안건설명자

예.

000 위원

그거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제10,11호 안건설명자

도시공간개선단이요.

000 위원

하고 있어요?

제10,11호 안건설명자

그런데 그거를 실시를 한 게 아니라, 공원녹지정책과에서 전체 콘셉트를 먼저 잡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000 위원

그러면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제10,11호 안건설명자

그게 끝나야지 그 후에,

000 위원

그거는 서울숲 마스터플랜인 것이고요.

제10,11호 안건설명자

예, 마스터플랜이 돼야 되는,

000 위원

그런데 이 바꾸시겠다는 운영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제10,11호 안건설명자

기본계획이, 그러니까 그쪽에서 마스터플랜이 확정이 돼서 부지가 확정이면,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업무추진을 한다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우리가 서울도서관에서 원하는 콘셉트가 어떤 도서관으로 할 것이냐, 가족도서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특화도서관으로 할 것이냐.' 그 건에 대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요구해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기초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그거에 대해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건립하는데 자료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000 위원

그러면 내년 7월에 용역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제출하면 가능할까요?

그 말씀대로 하면요.

○○○ 위원

그다음에 타당성할 것 같은데요.

위 원 장(○○○ 위원)

타당성을 언제 하세요, 그러면요?

○○○ 위원

그다음에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위 원 장(○○○ 위원)

그거 끝나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본계획이나 기초 어떤 콘셉트를 잡는지까지 다 넣어가지고 그다음에 타당성을 하신다?

제10,11호 안전설명자

실질적으로 한 내년 중반이나,

○○○ 위원

그러니까 시급하다 치면 서울연구원에 수탁연구, 수시연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콘셉트를 잡고 빨리 해서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 이렇게 해서 내년 7월까지 용역해서 하는 거보다는요.

위 원 장(○○○ 위원)

7월까지 기초조사만 하고 타당성은 안 하시고요?

○○○ 위원

만약에 마스터플랜에서 부지를 ‘여기가 명품도서관 자리로 아주 좋겠다.’라고 부지를 정해놨어요.

그런데 내년에 7월 이후에 타당성 해봤더니 타당성이 없어요.

여기에 도서관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 위원

접근성도 나쁘고 그래서요.

○○○ 위원

그렇게 되면 그 부지를 다르게 또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자리에 도서관이라는 기능이 정말 필요하냐, 안 하냐 먼저 따져본 다음에, 필요하다면 그다음에 마스터플랜에서도 어느 정도 담아야 됐던 아닌가 싶은데,

000 위원

그 부분은 워낙 부지가 광대하고, 그 중에 포스코가 또 5,000억 투자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정부분을 공공개발센터라고 해서 그런 투자 관련된 분석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큰 이렇게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0 0 0 위원

저는 이거를 서울시가 어떻게 서울숲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도서관을 거기 들어가고 다른 시설이 들어가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별로, 왜냐하면 서울이라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 원 장(0 0 0 위원)

질문을 중심으로,

0 0 0 위원

예, 그거는 그렇고, 권역별 서울도서관 분관 있잖습니까.

타당성 조사할 때 그거를 단순히 BC분석 같은 거 해서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수요파악이나 또 예를 들면 ‘그 다른 도서관, 국공립 도서관이라든지 구립도서관이라든지, 그런 다른 도서관의 연계나 협업이나 이런 거를 관련해가지고 타당성조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안 보이더라고요.

제10,11호 안건설명자

그것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000 위원

선행연구 중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서울공공도서관 서비스전달체계 선진화방안연구 현재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0 0 0 위원

거기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000 위원

예, 그렇습니다.

0 0 0 위원

나머지는 출자항목에 보니까 지역주민 설문조사, 인터뷰하겠다고 했는데 지출항목에서는 그게 없어요, 보니까요.

그런 좀,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요.

○○○ 위원

이게 권역별이면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제10,11호 안건설명자

서울시내를 가운데를 중심으로 다섯 개 권역으로 해서 권역별로,

○○○ 위원

각각에 대해서 다 타당성,

제10,11호 안건설명자

다 하나씩,

○○○ 위원

하나씩이요?

제10,11호 안건설명자

예.

○○○ 위원

위치는 다 결정됐습니까?

제10,11호 안건설명자

아니 부지를 선정을 하는 거를 저번에 심사, 위원님께서 심사를 다 해주셔가지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12월 달에 그 부지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 위원

그러면 부지가 결정이 돼야지, 그다음에 타당성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제10,11호 안건설명자

예, 그래서 올려놓은 겁니다.

○○○ 위원

12월까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선행연구 중에,

위원장(○○○ 위원)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설명자 퇴장.)

먼저 10번에 대한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심위원님.

○○○ 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 원 장(○○○ 위원)

필요하다고 보시고,

○○○ 위원

이게 그러면 부지가 결정되지 않으면, 부지가 결정되는 11월말까지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타당성조사가 돼야 하잖아요.

위 원 장(○○○ 위원)

예, 그렇죠.

내년,

○○○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내년 2월 달이면 충분히 착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현재까지는요?

○○○ 위원

그렇죠, 예.

제10호 안건결론

위 원 장(○○○ 위원)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거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본 안건은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금액 6개월에 3억은,

○○○ 위원

5개 권역,

위 원 장(○○○ 위원)

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위원

5,000만 원씩,

○○○ 위원

아까 다섯 개이기 때문에,

위 원 장(O O O 위원)

다섯 개요?

O O O 위원

5,000만원씩 할당되어 있어요.

위 원 장(O O O 위원)

5,000만 원씩이요?

5, 5, 25하고요.

그다음에 11번 기초조사용역으로, 그렇죠?

타당성 빼고, 타당성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만 사실은 여기는 되어 있는데 그거 빼고, 기초조사 용역에 대해서 주심위원님 의견.

O O O 위원

저는 부적정을 했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OOO 위원님.

OOO 위원

일단 저도 여기 와서 알게 됐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제출은 해놓고, 기초조사 용역이어서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고, 설명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예, 모르겠어요, 뭘 하시는지요.

OOO 위원

다만,

위 원 장(O O O 위원)

확인해야 되는 거죠.

OOO 위원

이 바운더리 내에 명품도서관과 과학문화미래관, 그리고 공원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조성이 돼야 되는 거고, 서울숲이 확대되는 개념입니다, 한강하고 연결돼서요.

그래서 이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나 방향성은 있는 상황인데, 설명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컨셉트 잡는 용역이기는 합니다.

000 위원

이게 언제 해야 하는 거죠?

기초조사연구를 하면, 지금 타당성조사 이 내용에는, 그러한 내용이 거의 없다고, 하나도 없거든요.

타당성조사에 맞추어가지고...만들고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에 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기간 및 단계별 추진계획 이런 게 조금 비슷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 기초조사연구의 연구내용이 있어야지 심의를 하죠.

제11호 안건결론

위 원 장(000 위원)

그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나온 의견을 가지고, 거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한 분 드셨습니다.

그래서 부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부결이, 부적정이 돼서,

000 위원

50%가 넘습니다.

위 원 장(000 위원)

이거, 하여튼 12번 또 서울도서관이네요.

000 위원

11번 가는,

위 원 장(000 위원)

11번 끝났고요.

12번도 서울도서관입니다.

제12호 안건

2019년 서울시 장서개발정책 수립

제12호 안건설명자

안녕하세요.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000입니다.

위 원 장(0 0 0 위원)

필요성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12호 안건설명

제12호 안건설명자

예.

2012년에 서울도서관이 지역 대표도서관으로 건립되면서, 서울시의 도서관 정책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도서관의 장서개발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부분 사업이 있었어요.

지금은 올해 5월에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차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 서울시 광역 차원에서 도서관 장서개발이나 보존, 그 다음에 폐기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밟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과제로 집혔고, 거기에 대한 이 용역에 대한 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서울시 도서관 서비스 중에 가장 열악한 부분으로 나온 것이 장서개발 분야였습니다. 장서가 부족하다는 부분, 그리고 올해 민선 7기 공약 중에도 도서구입비를 시민 1인당 1,274원에서 2,000원까지 확대하겠다는 사항이 있어서, 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장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어떻게 수집하고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2호 안건심의

위 원 장(0 0 0 위원)

주심위원님, 의견 주시죠.

0 0 0 위원

예.

이게 일반경쟁 입찰이신가요?

제12호 안건설명자

예.

○○○ 위원

그러면 됐고요.

대신 중요한 게 두 건의 선행연구하고의 차별성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없고, ‘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상이라든지 어떤 특수성, 지역성을 고려한 장서정책을 개발해 보겠다.’는 그런 어떤 목표는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시민으로부터 어떻게 피드백, 시민과 전문가를 어떻게 피드백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아까 잠깐 다시 돌아가면 국가 차원과 서울시 차원, 그다음에 기초 지역구, 지역구가 아니라 구 차원에서,

제12호 안건설명자

자치구, 구 차원에서요.

○○○ 위원

이런 거와의 연계라든지 이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12호 안건설명자

이게 실은 제가 찾아봐도, 광역 단위에서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한 예가 국내에서는 없었습니다.

국외에서도 제가 아는 바로는 1940년도에 소련에서 스푸크니트 미사일을 쏘면서 미국에서 ‘정보가 중요하다.’ 이러면서 ‘국가 차원에서 전 세계에서 나오는 자료는 미국의 도서관 한 군데는 무조건 이렇게 보존하자.’ 이 차원의 지역계획 말고는 수립된 바가 없어서, 사실은 조금 도전적이고 선도적인 용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서울시에서는 그 160개가 되는 공공도서관에 어떤 장서를 갖고 있는지 조사가 된 적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현황조사를 충실히 하고, 말씀하신 전문가나 의견수립을 위해서 별도의 간담회나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이 용역과 별도로 또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충실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

그쪽 파트는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용역이요?

제12호 안건설명자

아니요, 용역이 아니고 저희가,

○○○ 위원

전문가,

제12호 안건설명자

예, 그 서울도서관 부서에서 이 연구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수성이나 지역성은 살펴본 바로, 부산에서 빅데이터 연구를 통해서 ‘부산의 정체성이 뭐냐, 로컬리티, 지역성이 뭐냐.’에 대한 연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울도 방법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하나 연구내용에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서울의 로컬리티를 반영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심의자료에도, 예.

○○○ 위원

토론했었나요?

과제검토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제대로 안 되어, 언급이 그렇게 안 되어 있던 것 같은데요.

여하튼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 원 장(○○○ 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십니다.

그러면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제12호 안건설명자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명자 퇴장.)

위 원 장(○○○ 위원)

12번 논의 필요가 세 분이라, 논의를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심위원님.

○○○ 위원

저는 논의로 했던 이게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단지 너무나 뭐랄까, 입체적이지 못하고 그냥
이게 이렇게 굉장히 모다툼으로 하겠다고 해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특수성, 지역성에 대한 고민이 별로 과제, 과업서에 안 담
겨있어서 가장 걱정이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서울시가 국가도서관도
여기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연
계가 안 되어 있다든지 이런 거를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위 원 장(○○○ 위원)

○○○ 위원님의 논의필요는 필요하다는 거네요.

○○○ 위원

그렇습니다.

위 원 장(○○○ 위원)

굉장히 빨간 거를 많이 하셔가지고요.
예산담당 쪽에서요?

○○○ 위원B

저도 이 과업에 대해서 필요성은 있다고 하고, 법에서도 의무를 부여하
고 있으니까, 도서관 입장에서는 개발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
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안에 서울시립도서관이 한
개거든요.

그리고 구립도서관이 각자가 장서를 사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도서관에서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한다고 해서, 구립도서관들
이 이대로 따라줄 것이냐.

그러니까 실행되는지 여부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담보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 원 장(○○○ 위원)

실행방법을 담보해야 된다.

만약에 걱정이 되면 그런 거를 꼭 적어주세요.

OOO 위원B

예.

위 원 장(O O O 위원)

OOO 위원은 보니까 필요하다고 하면서 논의라고 적어놓으셨네요.

간 사(시정연구팀장)

예.

일단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명확하게 하고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장서정책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저희도 보고요.

다만, '과업 내용 중에서 학술용역 이외에 일반용역으로 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발주하는 거는 어떨까.' 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제12호 안건결론

위 원 장(O O O 위원)

그런 의견들을 다 정리하셔서 거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본 안건은 적정으로 판단되었고요.

특히 배 교수님이 많이 적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거를 담보할 수 있도록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3, 14, 15까지는, 16까지는 파란색이 많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13호 안건

서울시립국악원 설립 연구용역

위 원 장(O O O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오셨죠?

제13호 안건설명자

예.

위 원 장(O O O 위원)

연구의 필요성과, 내용은 저희가 다 봤고요.

연구의 필요성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13호 안건설명

제13호 안건설명자

문화예술과 000 팀장입니다.

저희가 서울시립국악원 설립을 위해서 학술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요.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국악인턴사업이라든가 국악공연, 그리고 신진국악
인 발굴 이런 사업들도 많이 했고요.

시립국악관현악단, 청소년국악당, 그리고 남산국악당하고 돈화문국학당
이렇게 기관들이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렇게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국악
사업들의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국악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필
요성에 의해서 지난 5월부터 TF를 구성해서 TF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는 것들이 ‘서울시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많은 기관들이 있고 단체들이 있지만 그거를 통합해서
줘어주는 그런 허브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은 못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런 거점시설인 국악센터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마침 그렇게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현장
의 전문가 분들도,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많은 필요성을 느끼셔서 저희
가 이렇게 시립국악원에 대한 설립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보통 국립국악원이나 이렇게 지방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국악
원들이 굉장히 생긴지가 오래 돼서, 50년도에도 생기고 최근에 생긴 게
92년도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유사한 용역실적이 없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따로 이렇게 용역을 부득이하게 하게 됐는
데요.

하드웨어를 갖춘 그런 국악원이 아니고요.

홍보나 인적 네트워크 등 빠르게 유연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모
든 기관들을 통합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 관련 기관 단체들을 유기적으로 줘어주는 그런 거점역할

의 서울국악센터를 설립해서 센터의 기능, 그리고 역할, 새로운 수요에 대한 전략, 그리고 핵심사업, 실행방안 등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심의를 의뢰했습니다.

제13호 안건심의

위 원 장(O O O 위원)

감사합니다.

주심위원님.

O O O 위원

우선 과업내용서에서 뭐야 저, 의견수렴에 대한 갈등 야기 우려가 크거든요.

있는데 다시 재조직하고 편제를 바꿀 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가 적었고, 그다음에 질문은 센터를 만들면 위상하고 조직 구상이 어떻게 되는지 정책적으로 먼저 갖고 계신가요?

제13호 안건설명자

저희가 생각하는 서울국악센터가 생기면, 물론 세종문화회관하고도 사전에 협의는 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는 TF에서 같이 모여서 논의는 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 있는 시립관현악단이나 청소년국악당, 그리고 저희가 두 개의 국악당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는 문화예술과에서 위탁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국악당하고, 국악센터 밑으로 들어가서, 하부조직으로 들어가서 국악센터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O O O 위원

센터는 서울시 조직인가요, 바로요?

소속으로, 아니면 상하관계로,

제13호 안건설명자

그거 아직은 용역 안에 그 조직을 민간위탁 형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재단법인화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도 용역에서,

O O O 위원

용역에서 정한다?

제13호 안건설명자

예.

000 위원

알겠습니다.

위 원 장(000 위원)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습니다.

그러면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제13호 안건설명자

감사합니다.

(설명자 퇴장.)

위 원 장(000 위원)

서울시립국악원과 관련해서는 다들 파란색으로 걱정하다고, 또는 보완의 의견을 주셨고요.

주심위원님은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000 위원

없습니다.

위 원 장(000 위원)

없으시고요.

000 위원은요?

000 위원B

없습니다.

위 원 장(000 위원)

예, 000 위원도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고요.

간 사(시정연구팀장)

예.

제13호 안건결론

위 원 장(000 위원)

그러면 본 안건이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본 안건은 걱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다음 14번입니다.

○○○ 위원

성원이 됩니까?

위원장(○○○ 위원)

이제 절대 못 가십니다.

이제 아무도 못 가십니다.

이제 끝입니다.

저까지 하시면,

간 사(시정연구팀장)

저까지 여덟,

위원장(이 회 정 위원)

일곱입니다, 현재요.

간 사(시정연구팀장)

한 분 더 오셔야 되는데, 화장실 잠깐 가셨으니까요.

위원장(○○○ 위원)

우리가 열다섯에 여덟 명이어야 되죠? 그렇죠?

간 사(시정연구팀장)

예.

위원장(○○○ 위원)

잠깐,

○○○ 위원

잠깐 쉬죠.

위원장(○○○ 위원)

잠깐 설까요?

간 사(시정연구팀장)

일단 진행을 하시고,

○○○ 위원

우리도 잠깐 화장실도 가고 잠깐만 쉬죠.

위원장(○○○ 위원)

잠깐 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계속 두 시간을 해서요, 5분만 그럼 잠깐 브레이크를 갖

고,

○○○ 위원

다 오셨으니까 여기까지 쉬시죠.

위 원 장(○○○ 위원)

여기까지 오셨으니까요?

○○○ 위원

그럼 마저 이것 아래 세 개를 끝내고 쉬시죠.

○○○ 위원

예, 오셨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제14호 안건

성저십리 확대지역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학술연구 용역

위 원 장(○○○ 위원)

역사문화재과에서 성저십리 관련된 용역을 필요성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14호 안건설명

제14호 안건설명자

성저십리 확대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학술용역은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저십리 지역이 두 번째 장보시면요, 성동구 저희가 1차 2013년에 했는데 일부 남은 지역이 있습니다.

성저십리가 4km이다 보니까, 4km 바깥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 일부, 은평구, 마포구 일부, 그리고 강북구와 도봉구 이 다섯 개 대상지역입니다.

지표조사 내용은 주로 기초조사하고 문헌 학술조사하고 선행연구 조사 이런 거 위주로 진행하고요.

결과물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GIS에 탑재해가지고, 일반시민들이 건설 공사를 할 때 미리 유적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4개년도 더 남아서 2022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전역 을요.

제14호 안건심의

위 원 장(O O O 위원)

주심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O O O 위원

20년까지 하면 2년차 사업이 다 완료가 되잖아요.

제14호 안건설명자

2022년까지입니다.

O O O 위원

22년까지요.

그다음 단계 구상이 있나요?

제14호 안건설명자

2022년까지가 되면, 사실 진짜 12년부터 했던 것들이 현행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산이 이것처럼 많이 들지는 않고요.

현행화 작업하는 단계가 2024년부터는 진행될 예정입니다.

O O O 위원

이게 계속 예전에 했던 거하고 보완하고 개정한다고요?

제14호 안건설명자

예전에 했던 것들을 발굴조사가 워낙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행화 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O O O 위원

그렇게 해서 성저십리 확대지역까지 하고 나면 성과에 비해서,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제14호 안건설명자

예, 많이 들어갑니다.

O O O 위원

문화재청 GIS 사업에 탑재한 것 외에는, 서울시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있나요?

제14호 안건설명자

이게 그 문화재청 GIS는 기본적으로 일반시민들이 보라는 내용이고요. 해당 25개 자치구, 해당 구청 포함해서 모든 자치구 건축과에 다 자료

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건축과 담당공무원들 교육이 이루어지고, ‘일반시민들이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적극적으로 이거를 알려라.’라는 취지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원)

이게 15, 16도 발표하실 건가요?

제14호 안전설명자

아닙니다.

뒤에 있습니다.

위원장(○○○ 위원)

다른 사람인가요?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 위원

성저십리 확대지역이라고 굳이 표현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제14호 안전설명자

지역을 사대문안, 그다음에 성저십리, 그다음 고구려지역, 백제, 한성백제 지역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성저십리가 마침 이 지역이 외부에, 외쪽에서 들어오는 교통로 역할을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저십리 확대라고 ‘문화재위원회하고 서울도심위원회에서 명칭을 어떻게 할까.’라고 했는데, 명칭과 지역을 선정을 했는데 그때 그 위원회에서 ‘성저십리 확대라고 하는 게 가장 걱정한 것 같다.’라고 해서 가지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 위원

기존 선행연구들이 꽤 있는데, 그거랑 다르게 보이려고 이름 바꾼 거는 아니고요?

제14호 안전설명자

그거는 아닙니다.

○○○ 위원

죄송합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또 질문이요?

OOO 위원B

그전에 강동구, 송파구 이렇게 연구를 하셨잖아요.

제14호 안전설명자

그렇습니다.

OOO 위원B

9개월 동안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는 공간범위가 25km, 34km 이랬었어요.

그런데 이번 연구는 똑같은 과업기간에 82km 공간적인 기준으로 하잖아요.

제14호 안전설명자

예, 맞습니다.

OOO 위원B

이게 소화가 가능한가요?

제14호 안전설명자

한성백제지역이나 이런 사내문 안이나 여기는 집중유적분포지역입니다. 상당히 굉장히 유적을 세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있고, 사실 성저십리 바깥쪽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유적분포가 밀집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봤는데, 해당 저기 학술기관을 통해가지고 이 정도 과업이면 충분하다고 이렇게 연락받았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더 달라고 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제14호 안전설명자

이 정도면 걱정한 것 같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질문이 없으시면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설명자 퇴장.)

주심위원님은 걱정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O O O 위원

예.

위 원 장(O O O 위원)

OOO 위원은 그 말씀이셨던 거고요.

그다음에 OOO 위원에서는,

간 사(시정연구팀장)

예, 걱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걱정하다고, 여기 있는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요.

간 사(시정연구팀장)

예.

제14호 안건결론

위 원 장(O O O 위원)

그러면 본 안건이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본 안건은 걱정한 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딱 5분만,

O O O 위원

아니,

위 원 장(O O O 위원)

계속이요?

O O O 위원

15, 16까지 마무리해 버리죠.

위 원 장(O O O 위원)

예, 오케이.

O O O 위원

욕심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위 원 장(O O O 위원)

다 하시고요?

O O O 위원

예.

위 원 장(O O O 위원)

오케이.

서울시관계자

15, 16 같이 한 분이 오십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같이 하세요?

좋습니다.

O O O 위원

같은 데어서요.

위 원 장(O O O 위원)

같이 하는데, 같은 동네, 예.

그래서 이게 논의필요 얘기가 있네요.

제15호 안건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활용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제16호 안건

서울 백제역사유적 활용 기본계획 수립 연구

위 원 장(O O O 위원)

역사문화재과이시죠?

제15,16호 안건설명자A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한성백제팀장 OOO입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예, 그래서 15번, 16번을 같이 필요성 중심, 내용은 저희가 다 봤고요.

필요성 중심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5,16호 안건설명

제15,16호 안건설명자A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활용 기본계획 수립 연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그림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 풍납토성입니다.

풍납토성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백제의 역사가 시작된 곳으로, 위례

성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때 있었던 500년의 백제역사를 함께 했던,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출발점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이렇게 아파트와 단독주택들로 가득 차 있어서, 역사성을 한눈에 느끼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풍납캠프 같은 경우, 위치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풍납캠프 영어마을, 풍납캠프로 활용하고 있는 이 지역을 박물관 등으로 활용을 함으로써,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백제역사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리고 홍보기능을 함께 함으로써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출발점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영어마을, 영어캠프 같은 경우는 외환은행 재건축, 외환은행 숙소로 사용되고 있던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부지 과정에서 사적, 유물층이 발견됨으로써 사적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영어체험마을로 활용이 되다가, 현재는 풍납캠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2009년도에 해당 부지를 문화재 역사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 등으로 활용을 하도록 이야기를 했었고요.

저희 다른 용역과정에서도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2018년도 3월에 문화재청에서 해당 풍납캠프에 대해서 철거, 퇴거 요청이 들어오면서, 이 용역을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섯 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식당동을 저희가 중심으로 아마 박물관, 전시관 등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주변에 유적전시물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이 유적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또 주민들의 복지시설로서 함께 활용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그다음 거요.

제15,16호 안건설명자A

그다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서울 백제역사유적 활용 기본계획 수립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송파구에는 네 가지의 유적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풍납토성을 비롯해서 몽촌토성, 그리고 석촌동 방이동고분군 이 네 가지가 한성백제시대의 네 가지 유적을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고, 특히 전체 700년간의 백제역사 중 500년을 차지하고 있는 한성백제유적은 제외하고, 2015년도에 공주·부여·익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먼저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확장등재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현재 활용계획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활용 관련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보존관리활용계획으로서, 세 가지를 함께 용역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당초 계획 심의과정에서 보존관리계획을 먼저 추진을 하고 활용계획은 별도로 추진을 해서,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의견을 주셔가지고, 현재 올해 8월에 보존관리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용역이 준공이 되었고요.

이 계획을 바탕으로 활용계획을 내년도에 용역을 별도로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15,16호 안건심의

위 원 장(O O O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게 자문을 드렸다고요?

제15,16호 안건설명자A

예.

위 원 장(O O O 위원)

진짜로요?

예, 알았습니다.

간 사(시정연구팀장)

두 건을 같이 하시는 걸로 했는데,

위 원 장(O O O 위원)

원래 잘랐죠.

간 사(시정연구팀장)

용역실행 중에 활용은 빼시고 앞에 두 개만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하시는 것으로요.

위 원 장(O O O 위원)

오케이.

주심위원님, 질문 먼저 하시죠.

O O O 위원

풍납캠프 활용기본계획에서 이 연구 말고, 사전에 2009년 문화재청 용역 말고 관련한 용역이 있었나요?

제15,16호 안전설명자A

별도로 박물관 관련된 용역은 없고, 저희가 이번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보존관리계획 같은 경우에서도 전체적인 그런 풍납토성,

O O O 위원

을 8월에 나온 보고서죠?

제15,16호 안전설명자A

예, 나왔는데 ‘그 용도를 박물관 등으로 활용을 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O O O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박물관 등’은 여기에서 결과에서 나온 것 그대로 쓰신 건가요?

제15,16호 안전설명자A

그런데 정확한 구체적인 용도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그거를 용역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박물관이,

O O O 위원

여기 과업개요, 여기 개요에서는 그거를 강하게 써놓으셔서 이미 정책 방향을 정하고 쓰신 것인지 제가 여쭙보는 거예요.

제15,16호 안전설명자A

예, 박물관 용도가 근처에 있는 한성백제박물관의 분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용유물전시관으로 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확정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복지센터, 그리고 아니면 도서관 등의 다양한 활용방법이 있기 때문에 용역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백제역사유적 활용기본계획 연구용역에서요.

2016년, 17년,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보고서까지를 포함해서 순서가 쪽 조정되었는데, 이 활용계획이 그 선행연구 성과하고 같은 레벨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후속으로 부차적인 거에 있는 겁니까?

제15,16호 안건설명자B

제가 담당 주무관인데 설명,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2016년에 이와 같이 똑같이 학술용역 심의를 해서, 2017년 예산으로 진행을 할 그런 학술용역 주제가 보존관리활용기본계획 연구였습니다.

12개월로 넣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고기간이며,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가 넘어가고 과업내용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뭔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선 단계에 발굴과 보존관리 그거에 대한 게 먼저 선행이 되고, 그 영역이 설정된 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활용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과업내용을 조절해서 잘라라.’ 이래서 저희가 그 과업내용에 활용 쪽을 별도로 밀고, 그 이전에 보존관리 쪽에 맞추어서 한 10개월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생님들께서 더욱더 말씀하시는 게, 서울의 이 대도시권에 있는 유산은 지방에 있는 이런 산이나 들 이런 쪽에, 단독 있는 이런 유산하고 틀리기 때문에, 주민과 상당히 밀접해 있는 이런 과정에서 계속 개발과정에서 훼손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존관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거 기반으로 활용계획을 짜는 거는 잘했다. 오히려 신의 한수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어요, 전문가 선생님께서요.

그래서 10개월을 거쳐서, 학술대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여러 분야의 선생님의 의견을 모았는데, 내년에는 이 기본방향이 설정이 됐으니까 이것을 갖고 보존관리만 할 게 아니라, 주민과 문화재 공생이 요새 트렌

드이니까 주민이 느낄 수 있는, 더군다나 이쪽 유적은 특징이 눈에 보이지 않고 다 매장문화재로 땅속 깊숙이 있거든요.

보존은 잘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이거를 어필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땅속에 있는데 그게 보이지가 않으니깐, 전시관 하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앞에 이 영어마을을 활용해서 전시관을 이런 시급성 때문에 먼저 그거를 추진을 하고, 전체적으로 공주·부여·익선과의 그 연계성, 주변 유적과의 연계성 그런 차원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프로그램과 관련되는 시설, 축제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연계할 수 있는 것을 기본방향을 다음 연도 계획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또 질문 있으신가요?

OOO 위원B

풍납토성 서성벽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잖아요, 삼포산업하고요. 그런데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활용계획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요?

제15,16호 안전설명자B

그거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요.

풍납토성 서성벽은 마지막 대법원 심의 중에 있는데, 그 안에서의 논란이 되는 거는 삼포레미콘 공장이 유적지 안에 들어서 있는데, 협의를 계속 잘해 오다가 마지막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죠, 기업이니까요.

그래서 풍납토성이 매장문화재이니까 이것도 원인이 거기에서부터 출발된 것 같아요.

주민들은 문화재로 인해서 제재가 많다 보니까, 이게 문화재이기는 한데 얼마나 중요한지, 박물관 하나 없는 이런 상황에서요.

더군다나 이거는 석성이 아니라 토성이기 때문에, 계속 해마다 깎여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토성이 자꾸 낮아지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서성벽 쪽이 많이 훼손이 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올림픽대도로 나면서 많이 깎여나가서, 지금 눈으로 보면 남쪽의 일부만 남아 있고, 이 돌아가는 쪽에는 거의 도로가 나고 하면서

이게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이 빨강게 된 부분이 사적으로 지정되었는데, 이쪽에 아예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레미콘공장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있고 이쪽은 아예 성벽 자체가 백제는 없었다, 이 바깥에 한강이 수호를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 성벽을 쌓을 필요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소송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똑같이 동조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발굴을 이쪽을 정말 이걸 법적 소송까지 갔으니까 한번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쪽을 먼저 발굴계획에서 조정을 해서 여기를 먼저 파게 돼서, 서성벽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오고 이 중간에 시굴 같은 거를 나들목으로 통로, 한강개발계획에서요.

그 과정에서 또 성벽선이 나오면서, 오히려 소송에 있어서의 문화재 진위 여부 그거는 이미 해소가 됐고요.

그 과정에서 삼포는 다른 표적수용, ‘왜 자기네만 일찍 나가라고 그러냐.’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문화재 논란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 소송도 그렇고, 이 내부에는 또 주민들이 함께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땅속에 잘 있는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몰라서 뭔가 주민들한테 알리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유적이다.’ 라고 알리는 조그마한 규모의 전시관도 필요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 왕궁 안에 선생님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것 지키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게,

OOO 위원B

‘소송 승패랑 상관없이 활용계획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시고,

제15,16호 안건설명자B

그렇죠, 예.

OOO 위원B

‘소송 진행 중이지만 서성벽이 있다는게 오히려 확연히 드러나고 있고,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제15,16호 안건설명자B

예.

그래서 오히려 서성벽이 드러나면서, 그쪽도 현장박물관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O O O 위원)

예.

O O O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풍납캠프 기본계획 연구용역 같은 거 보면요, 내용이 타당성 내용이 있고 기본계획 내용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타당성검토 결과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15,16호 안건설명자A

예.

일단 타당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저희가 당연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제로서 집어넣어놨지만, 타당성은 여러 다른 용역과 연구들에서 박물관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은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사의 타당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 O O 위원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기본계획을 미리 담아서 수립을 같이 하겠다?

제15,16호 안건설명자B

바로 설계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미리 좀, 그러니까 타당성이 이번 에 처음 하는 게 아니라요, 기존에 이 안에 있는 업무를 활용할 만한 가장 적합한 건물은 현재 이 건물밖에 없거든요.

다 문화재지역이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로부터 이 건물을 뭔가 주민과 관련되는 이런 시설로,

O O O 위원

아니 그 시설은 그럴 수 있는데, 그걸 박물관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박물관 쓰는 게 타당하다고 해야지, 박물관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계획

을 수립을 할 거잖아요.

제15,16호 안전설명자B

예.

그래서 이게 좀 특수한 상황인데요.

이 그림을 저희가 갖고 온 것은, 건물이 이렇게 여섯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건물은 외환은행 기숙사 건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들어가면 거의 숙소와 좁은 통로 복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외관상으로 박물관으로 쓰여 질 수 있는 건물은 이 내부에 이것밖에 없는데 이런 용도의, 다 똑같거든요.

다만, 이것과 이 앞에 건물이 조금 큼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으로 하려면 기본적으로 위, 아래 층고도 높아야 되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이 많은 건물 중에서 어떤 건물을 박물관으로 하고, 어떤 건물을 문화재 관련되는 도서관이 됐던 이런 주민이 원하는, 여러 동이 있으니까 박물관 포함 그런 복합시설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여기에서 조금 더 미세하게 잡아서 기본계획 세워서 설계 들어가겠다는 거죠.

위 원 장(O O O 위원)

감사합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설명자 퇴장.)

15, 16이죠?

O O O 위원

예, 15, 16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6번은 활용기본계획은 지난번에 같이 했어야 되는 건데, 행정기술상 분리되어서 조정된 사안이니까 저로서는 ‘별 이견 없이 원안대로, 요구한 대로 가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판단이 됩니다.

5번 창의마을 풍납캠프 건인데, 담당 주무관 설명을 하셨지만 너무 박물관이라고 하는 거를 맞춰놓고 보니까 이 방이동, 석충돈, 몽촌토성, 풍납토성 이 전체 권역에서 백제유적, 백제역사유적 전반에 대한 고려 없이 너무 편의적으로 급하게 박물관으로 쓸 것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로서는 광역을 놓고 여기에 도입 필요한 시설이 뭐고 수요가 뭐고, 현재 있는 자원이 뭘데 이거를 어떻게 맞춰가는 게 낫겠는지 하는 것이 훨씬 그러한 판단이 필요해요, 조사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현행에 요구된 박물관 등 해서 박물관을 짚어서 가는 거는, 너무 선부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정보완이 필요한 과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예, 주심위원님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사실은 15번은 아까 발표자가 말한 것처럼, ‘그전에 보존계획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것 끝나면 그거 가지고 활용계획을 하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가 작년에 이거 반 잘라가지고 넘어온 프로젝트, 내용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있는 사실은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또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면,

O O O 위원

15번은 이미 그 아까 건물이 다 있는 상황인 거죠?

그 건물을,

위 원 장(O O O 위원)

예, 맞습니다.

O O O 위원

그럼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도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활용계획이,

O O O 위원

법적 요건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리모델링을 하려면 이게,

위 원 장(O O O 위원)

그거 때문에 아마 타당성이 있어야 될 거예요.

O O O 위원

예,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나가야 되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 묶어서 할 것이고, 타당성과 기본계획을 묶어서 한 것 같습니다.

제15호 안건결론

위 원 장(O O O 위원)

뭔가 기본계획이 있어야 그거 가지고 타당성도 할 테니까, 그래서 두 개 묶여가지고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5번부터 거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풍납캠프 활용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15번은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제16호 안건결론

16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백제역사유적 활용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본 영역도 적정으로 판단, 심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두 개 5분에 하려고 했는데 20분 걸렸어요.

O O O 위원

설명을 너무 오래 하시니까요.

O O O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본부에 일을 맡고 있는데, 제가 미룰 수 있는 시간이 5시 반이었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5시 반에 끝나면 되나요?

O O O 위원

예, 일어나야 됩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몇 번이지요?

지금입니다. 그렇죠?

18, 19, 20,

O O O 위원

아까 정족수 이야기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 위원

한 명도 빠지면 안 된다고 그러셨죠?

위원장(○○○ 위원)

둘, 넷, 다섯,

서울시관계자

여덟 분이십니다.

위원장(○○○ 위원)

여덟.

우리가 열다섯에 여덟이죠?

○○○ 위원

화장실 가서 그런 것은 정족수 관계없죠?

위원장(○○○ 위원)

예, 다녀오셔도,

서울시관계자

18,

위원장(○○○ 위원)

18, 19, 20을 한 분이 하시나요?

아니면,

서울시관계자

아니에요.

위원장(○○○ 위원)

따로 따로 해요, 세 분 다요?

서울시관계자

예.

위원장(○○○ 위원)

18번은 ○○○ 위원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제가 정하겠습니다.

제18호 안건

2030 서울생활권계획 백서 발간

제18호 안건설명자

안녕하십니까.

위 원 장(O O O 위원)

예.

생활권계획 추진반이시죠?

제18호 안건설명자

예.

위 원 장(O O O 위원)

앉으세요.

본 용역이 필요하다는 필요성 중심으로, 내용은 저희가 다 봤습니다.

제18호 안건설명자

예.

위 원 장(O O O 위원)

필요성 중심으로 이게 왜 필요한지를 설명,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호 안건설명

제18호 안건설명자

안녕하십니까.

생활권관리팀장 000입니다.

저희가 금번에 실시하려는 용역은 서울생활권계획 수립 과정에 있어서 백서 발간을 위한 연구인데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전국 최초로다가 생활권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거는 법정계획이고요.

저희가 그 4년 동안에 그동안에 3월 달에 확정공고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이게 전국 최초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많은 문의과정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저희가 정책보고서 외에 보고서에 담지 못한 각종 기록들과 그다음에 협의과정에 대한 시행착오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다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또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 같은 거를 도출

을 해서, 저희가 향후에 재정비할 때라든가 그다음에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생활권계획 수립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또 활용도 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연구 분야에 있어서 활용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연구과제로 놓은 것은 ‘그동안에 4년 동안의 기록들을 그냥 사장시키기에는 너무나 아쉬우니까 이거를 정리를 해서 저희가 기록으로 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향후 과제에도 활용,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8호 안건심의

위 원 장(O O O 위원)

감사합니다.

O O O 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면요.

위 원 장(O O O 위원)

예,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요.

O O O 위원

사실은 방대한 분량의 연구를 했기 때문에 백서의 작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연구내용 중에서 보면 자료로 정리하기에는 사업비가 조금 많은 것 같고요.

향후에 어떤 재정비 등등에 주요개선정책과제로 보기에선 또 사업비 너무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좀 모호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제18호 안건설명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거를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단순하게 기록정리 같은 것들은 우리 직원 분들이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했었고요.

그런데 최종결론을 내린 거는, 직원 분들이 하면 단순히 자료수집밖에 안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려는 목적은 그동안의 기록을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최초로다가 서울시를 갖다가 권역

으로 나누고 116개 지역생활권이라는 것으로 나누어서요, 이것을 갖다가 처음으로다 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수립하는 것이 어떠한 틀이 있었거나 체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1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만약에 100이라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여기에서 처음 수립해 만드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만들어진 그 생활권계획이 100% 완전하다고 또 장담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뭔가 개선하거나 보완할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생활권계획이라는 것을 연구한 곳이 서울연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기록도 정리하지만, 그동안의 우리가 4년간의 과정을 돌아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점검도 하고 그래서 분석도 해서, 이게 재정비를 갖다가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5년 후에 할 때는 지금 보다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자체보다는 그래도 서울연구원에서 많이 했으니까 연구를 통해서, 이게 사업비가 60억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할 때 사람이 다 바뀌고 없는데, 그때는 또 다시 시작이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게 낫다, 처음이니까.'

그리고 서울시만 쓰는 것도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쓸 수 있고, 국토부에서도 이게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한 거거든요.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제시해서, 법이라든가 지침 같은 거를 갖다가 서울시 여건에 맞게끔 개정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위원)

예.

○○○ 위원

백서를 정리하시는 것 좋고요.

그다음에 생활권계획 수립할 때 어느 정도 인벌브됐던 서울연구원이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꼭 서울연구원한테 이거 수의계약을 하려면 학술용역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학술용역을 올리신 거죠?

제18호 안건설명자

그거는 아니고요.

○○○ 위원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과업 내용 자체는 학술적 성격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학술용역으로 수행하는 것 자체가 적정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18호 안건설명자

저희가 용역 하는 방법은 크게 기술용역이 있고 학술용역이 있고 일반용역이 있는데, 이게 시공이라든가 설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술용역은 안 되고요.

○○○ 위원

일반용역으로요?

제18호 안건설명자

일반용역으로 가면 일반용역은 일단 다 풀어지기 때문에,

○○○ 위원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이 못 하니까 그러시는 거죠?

제18호 안건설명자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용역으로 만약에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이 내용을 아는 분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일반용역으로 갔을 때는 이게 일반경쟁 입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는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연구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방법 자체가,

간 사(시정연구팀장)

일반용역은 수의가 불가능한가요?

제18호 안건설명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법 자체가 여러 가지를 고민했을 때, 그 최선이 그래도 학술용역이다.

○○○ 위원

‘그거 있고 여러 가지 계약방법,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학술용역으로 올
렸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제18호 안건설명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위 원 장(○○○ 위원)

일반용역으로 예를 들면 해도, 예를 들면 서울연구원에서 제안서를 제
일 잘 쓰지 않을까요?

누가 더 잘 쓸까요?

제18호 안건설명자

근데,

위 원 장(○○○ 위원)

아닐 수도 있나요?

예, 알았습니다.

오케이.

또 ○○○ 위원에서는 방금 하셨으니까,

간 사(시정연구팀장)

말씀하셨던 부분에 일반용역으로 저희는 했으면 좋겠고, 굳이 학술용역
으로 올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라 했는데, 일단은 말씀드렸습니다.

위 원 장(○○○ 위원)

의견을 주셨고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제18호 안건설명자

감사합니다.

(설명자 퇴장.)

위 원 장(○○○ 위원)

주심위원님은 걱정으로 생각하셨고요.

○○○ 위원

예.

위 원 장(○○○ 위원)

OOO 위원님의 생각은요?

O O O 위원

백서 발간 이만한 7017 사례를 봐도 용역비를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 원 장(O O O 위원)

조절을 해서요?

간 사(시정연구팀장)

예.

제18호 안건결론

위 원 장(O O O 위원)

용역비를 조절한다는 전제 하에서 거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본 안건은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다음 19번입니다.

제19호 안건

시민체감형 토지이용 변화 지표 발굴 및 분석

위 원 장(O O O 위원)

생활권계획추진반이시죠?

제19호 안건설명자

예.

생활권계획추진반에 OOO 팀장인데요.

위 원 장(O O O 위원)

연구의 필요성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19호 안건설명

제19호 안건설명자

이 연구도 아시겠지만, 서울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 도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토지이용정보가 상당히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되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토지이용정보에 대한 변화패턴이나 그다음에 어떤 부동산지가의 변화, 그다음에 용도지역의 변경 이러한 것들이 정기적으

로 어떤 조사가 돼서, 그게 각종 어떤 도시정책을 수립하는 전문가들이나 또 연구자 이런 분들한테 제공을 해서, 중복적인 투자가 되지 않기 위한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변화패턴을 가지고 앞으로 2030이든 아니면 2040년 이 정도에 서울의 어떤 토지이용변화를 전망해서 도시기본계획이든 아니면 도시공간정책에 그러한 변화패턴을 반영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그러한 연구용역으로서, 일단 2005년에 아마 기본적인 조사를 하고 나서, 그 이후로 한 번도 진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한 5년 단위로 해서 변화패턴을 분석을 하는 게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연구용역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9호 안건심의

위원장(○○○ 위원)

주심위원님.

○○○ 위원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이 안 서는데요.

기존에 DB시스템이 있는데,

제19호 안건설명자

예.

○○○ 위원

그 DB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새롭게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제19호 안건설명자

지금 현재 지표는 아마 SDW라고 해가지고 도시공간정보플랫폼인데요. 그거는 공간플랫폼이 주가 되고요.

거기에 또 저희가 UP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UP 정보가 있는데, UP 정보는 아마 자치구에서 입력을 하므로 인해서 건축물 용도나 이런 것들을 클릭을 해야지만 일괄적으로 볼 수가 있거

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존에 주어져 있는 그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뭐
랄까, 지금 현재의 재산세 과세대장이나 아니면 기초건축물정보대장 이
런 것들을 가져와서 조금 더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저희가 생활권계획이라고 해가지고, 7개 분야로 나누
어가지고 7개의 지표, 지금 말씀드린 도시공간이나 산업일자리, 주거정
비 등등해서,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빅데이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연계해서 뭔가 전망을 예측을 하고, 또 토지이용에
대한 지표가 사실 명확하게 변화지표로서 어떤 어떤 걸 설정해야 될지
는, 사실 조금 연구를 통해서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만든다고는 일단 하고 있는데, 어떤 게 될 수 있는지는 좀,

○○○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표의 단위가 블록 단위가 들어갈 수 있고 건물 단위로도 들어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19호 안건설명자

예.

지금은 가급적 가장 중점적인 거는 생활권 단위로 취합을 해보려고 그
러는데요.

생활권은 2, 3개 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은 이런데,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건축
물하고 그다음에 건축물 포함한 블록 단위 정도로 일단은 한번 설정을
해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 원 장(○○○ 위원)

또 질문 있으신가요?

○○○ 위원

꼭 다른 때가 아니고 19년도에 하셔야 되는 사유들이 있나요?

제19호 안건설명자

예.

○○○ 위원

사업적인 성격이라든지 다른 사업과 연계라든지 그런 거요.

제19호 안건설명자

사실은 2005년에 그때는 건축물에 대한 현황도 정도만, 건축물에 대한 현황만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 복잡하게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부터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내년에 아마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려고 학술용역에다가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토지이용변화패턴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아마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이거를 같이 진행하면서, 도시기본계획에 일부 반영을 해나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 하나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건데, 서울시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과에서 서울시 도시계획 기본계획모니터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짚 모니터링을 사실은 현재 해왔단 말이죠.

제19호 안건설명자

예.

위 원 장(O O O 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다르게 대상은 또 토지이용의 변화를 계속 모니터링 도시계획과는 해왔고, 그거를 가지고 기본계획 세운다고 예산을 받아갔는데, 생활계획추진반에서 또 토지이용변화를 또 모니터링을 한다.’ 이게 중복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19호 안건설명자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도 사실은 그래서 그거 때문에 방금 전에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아마 2019년에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예산이 1억 정도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시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모니터링비는 사

실은 기본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은 토지이용변화 패턴뿐만이 아니고요.
물론 지금 현재는 토지이용 패턴만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양한 도시기본계획의 공간구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모니터링비로 1억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과 해서 이것까지 같이 만약에 동시에 하면 좋은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 모니터링비에다가 뭔가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해주시면, 저희도 도시계획국 차원에서 협의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1억 가지고는 이거까지 포함해서 하기에는 너무 과업 물량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모니터링 2억 아니었나요?
제 기억에 2억인데요.

제19호 안건설명자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위 원 장(O O O 위원)

매년 2억 아니었나요?
지난, 2억 맞죠?

O O O 위원

예, 지난주 목요일 날이요.

위 원 장(O O O 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19호 안건설명자

좀 조정해 주시면,

위 원 장(O O O 위원)

예, 질문 없으시면 퇴실,

제19호 안건설명자

감사합니다.

(설명자 퇴장.)

위 원 장(O O O 위원)

주심위원님.

○○○ 위원

저는 방금 하신 말씀이 그거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게 생활권계획추진반에서 할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 원 장(○○○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이미 하고 있고,

○○○ 위원

이미 하고 있고, 모니터링 한다면 저는,

위 원 장(○○○ 위원)

거기에서 해야,

○○○ 위원

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 원 장(○○○ 위원)

업무의 연속성도 있고 맞다고 보는 거죠.

○○○ 위원

예.

위 원 장(○○○ 위원)

만약에 필요하다면, 도시계획과가 토지이용계획이 진짜 도시계획 기본 계획에 정말 필요하다면 도시계획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거 여기에서 하면, 나중에 여기에서 다 하고 달라고 그래서 도시계획국에서 할까요?

제가 볼 때 절대 주지도 않고 달라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요.

○○○ 위원

우선 어차피 도시계획국인데 담당 반만 다른 거죠?

오 단 이 위원

반만 다릅니다.

위 원 장(○○○ 위원)

반만 다른가요?

○○○ 위원

예, 도시계획국 소관인데,

위 원 장(○○○ 위원)

저는 주택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2억 가져갔는데요.

도시계획 모니터링해가지고, 기본계획에 있는 사항들 다 모니터링한다고 매년 2억씩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하면 매년 또 토지계획 2년씩 하자고 그럴 거예요.

간 사(시정연구팀장)

2억씩 달라고,

위 원 장(O O O 위원)

저는 그거는,

O O O 위원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예.

간 사(시정연구팀장)

중복이라는 말씀이지요?

위 원 장(O O O 위원)

중복이죠.

O O O 위원

그거는 서울연구원이 항상 수의를 해야 하는 그 내용이죠?

O O O 위원

그렇죠.

위 원 장(O O O 위원)

그것도 사실, 맞아요, 내용상으로도 사실 좀 그래요.

O O O 위원

이거는 모델개발 쪽 아닌가요?

19번,

O O O 위원

분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모델, 지표를 만들고,

O O O 위원

새로운 지표를 만들고,

O O O 위원

매번 그거에 의거해서,

○○○ 위원

그다음에는 모니터링 쪽으로 넘겨줘서 이렇게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저는 지표개발로 보여서 성격이 다르다.
‘데이터를 꼭 조사해서 해석하는 거하고, 지표개발해서 그다음 단계에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내는 거는 다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요.

○○○ 위원

그래서 하여튼 차별화는 있겠지만, 역할분담은 있겠지만 미리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중복해서 맡주하게 되면, ‘일단 줄 테니까 알아서 역할분담해라.’ 이런 꼴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 위원

현재로서는 구별이 안 된다?

제19호 안건결론

위 원 장(○○○ 위원)

이 정도 논의 하고요.

그러면 거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본 안건은 부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다음 20번입니다.

제20호 안건

권역별 도시변화 예측 및 균형발전 전략 수립

위 원 장(○○○ 위원)

권역별 도시변화 예측 균형발전 전략 수립이죠?

제20호 안건설명자

예.

위 원 장(○○○ 위원)

필요성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내용은 저희가 다 봤습니다.

제20호 안건설명

제20호 안건설명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000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할 용역은, 현재 서울시에서는 중심지나 주거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도시개발수법이러든지 도시관리계획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권역별에 있어서, 대규모 주거지에 대한 정비사업이나 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지역 간 불균형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학술용역에서는 서울변화과정에 있어서 사회, 경제적 요소뿐만 아니라, 도시개발방식이나 도시계획정책과 연계해서 다각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서울의 주요지역이나 권역별 변화 실태를 파악하고 진단하고자 합니다.

이런 도시변화의 과정에서 지역불균형을 진단하고, 실제적으로 강남이나 강북 또는 권역별 주거지역 등에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체계라든지 건축물 용도계획, 또 임대주택 확보비율 등에 대한 정비사업에 대한 제도와 계획 요소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정책 및 제도개선을 통한 권역별 균형발전전략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이런 연구결과물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정책의 기초자료로서 활용을 하고, 또 실제적인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나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 제도개선과 연계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제20호 안건심의

위원장(000 위원)

감사합니다.

주심위원님.

000 위원

균형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목표가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시내에 있어서의 권역별, 사실은 균형발전의 어떤 단위가 권역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의문이고요.

생각하시는 권역이 강남, 강북이 아니잖습니까, 여기에서 권역이라고
하면요.

제20호 안건설명자

예.

○○○ 위원

그것도 문제도 되는데, 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균형발전 논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
회·경제적인 여러 가지 균형발전이 있는데, 그런 게 다 할 수 없잖습니
까.

제20호 안건설명자

예, 맞습니다.

○○○ 위원

그렇다면 이게 분명하지 않는 게, 무엇을 가지고서 불균형의 실태를 조
사할 것이며, 그다음에 무엇을 가지고서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그
수단을 통해서 어떤 불균형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타겟을 하는지 거기
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제20호 안건설명자

그래서, 말씀드려도 되죠?

○○○ 위원

예.

제20호 안건설명자

우선 도시계획국에서 행정2부시장님 업무보고 시에 5월 달, 7월 달 두
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나왔던 문제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도시
계획국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업무지시사항으로 주신 내용이 그동안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 이력을 바탕으로, 그간 서울의 변화를 분석하고
미래개발방향 및 균형발전에 대한 대응관리의 필요성을 추가적인 도시
계획국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논할 때, 그 변화의 과정

의 분석은 경제적 분석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변화 분석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거기 재개발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임대주택이라든지 주택공급의 양이, 지역권역별이라고 것은 생활권계획에서 가지고 있는 권역별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강남에서 이런,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강남이나 강북이나 그 이런 축으로 봤을 때, 어느 쪽에서 앞으로 필요한 주거에 대한 물량에 대한 예측과 함께,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더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

제도적으로는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다를 텐데, 같은 기부채납을 해서 같은 용적률을 가지고 같은 임대주택을 갖는 게 맞을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주거지에 대한 부분이 도시계획국에서는 균형발전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 원 장(○○○ 위원)

또 질문 있으신가요?

○○○ 위원

혹시 그 뒤에 것에서 추진하고, 이번에 용역으로 나가는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아시나요?

제20호 안건설명자

제목만 봤습니다.

○○○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양한 분야가 있거든요.

문화, 경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전 분야에 대해서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세부과제들을 선정한 그 부분인데, 도시계획국도 그렇고 기초실도 그렇고, 다양한 지역균형발전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용역들을 하시고 있는데, 총괄적인 역할을 위해서 도시계획국이나 기초실에서 그런 과제들 받으셨을 텐데, 오히려 각 과나 그런 유사한 과제들을 분절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어요.

제20호 안건설명자

예.

○○○ 위원

특히 도시계획국 같은 경우에는, 한 과에서 비슷한 용역들을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오히려 본부 단위나 국 단위에서 가져다놓고 이거를 좀 이렇게, ‘이거는 부서별로 정확하게 용역에 그거를 나누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초실과 많은 부분이 겹치지만 또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정이 많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20호 안건설명자

그래서 도시계획국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생활권계획에서는 생활권 단위에 있어서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을 하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권역별 정비사업에 대한 제도라든지, 주거지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결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급되고 있는 용도에 대한 부분들이 정비계획에서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누고 있는 비율들이 강남, 강북과 제도적으로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기초실에서 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사회, 경제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에 대한 재정비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이게 한마디로 도시개발사업 수단을 어떻게 조정하면, 이런 얘기잖아요?

제20호 안건설명자

예, 맞습니다.

○○○ 위원

실제로 물리적, 공간적 수단 위주로 보는 거죠?

제20호 안건설명자

예.

위원장(○○○ 위원)

제목을 그렇게 뽑으시지, 이거 엄청,

○○○ 위원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뽑았네요.

위 원 장(O O O 위원)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제20호 안건설명자

부족한 부분은 차후 진행하면서, 다시 범위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서 충실히 시행하겠습니다.

지시사항도 있어서 저도 많이 부담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설명자 퇴장.)

위 원 장(O O O 위원)

이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은 도시계획국이 아니군요?

O O O 위원

지난번에 그때 마지막에 하셨던 기획조정실의 기획담당관에서,

위 원 장(O O O 위원)

그래요?

O O O 위원

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세부과제 창출한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O O O 위원

그럼 서울 연구원에서 연구하는 부서도 서로 다르게 됩니까?

O O O 위원

다르게 되냐고요?

O O O 위원

왜냐하면 똑같이 수의계약을 서울연구원에다가 줬는데,

위 원 장(O O O 위원)

지역균형개발 기초실 것도 서울연구원이었나요?

O O O 위원

예, 수의계약이죠, 거기가요.

간 사(시정연구팀장)

예.

위 원 장(O O O 위원)

이거는 도시계획국은 아닐 텐데, 도시계획국에서, 서울시정연에, 서울연구원의 도시 쪽에서 하나요, 이것도요?

간 사(시정연구팀장)

도시 쪽에 무슨 본부에서,

O O O 위원

여기 쓰여져 있거든요.

검토해 주신 게 서울연구원 수의계약, 그리고 이 건도 수의계약 서울연구원.

위 원 장(O O O 위원)

10개월 3억이네요.

O O O 위원

그럼 둘이 하면 5억인데,

위 원 장(O O O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면 안 되네요?

O O O 위원

내용이 똑같은 수가 있으니까 나누어서,

위 원 장(O O O 위원)

엄청 많은 분야죠. 그렇죠?

O O O 위원

그거는 좀 추상적인 부분들이 있고, 여기는 재개발에 대한 그런 특화된 부분들이 있어서,

O O O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서울시나 이런 데서 아프겠지만,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이 서울시에서 있어서의 균형발전, 불균형발전을 초래한 중요한 기조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O O O 위원

그렇죠.

O O O 위원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과제라면 저는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그런 논의들도 많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 위원

다른 데서 했으면 좋겠어요, 세밀한 것은요.

똑같은 데서 하니까 결론이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 위원

그런데 워낙 정치색이,

○○○ 위원

어렵죠?

과거에 되어 있는 색이고요.

○○○ 위원

긴밀한 계획이어서요.

간 사(시정연구팀장)

의견 주시면, 제가 봤을 때도 굳이,

○○○ 위원

그렇죠, 서울연구원이 아니면 다른 좀,

간 사(시정연구팀장)

서울연구원에 너무 많이 가 있어서 감당하실 수 있을지도 잘,

위원장(○○○ 위원)

그러니까 또 그런 면도 있고, 사실은 권역별 도시변화 예측 이것도 아
까 말씀드린 매년 2억씩 들여가지고 자기들은 자료들을 짝 축적해왔으
니까,

○○○ 위원

쉽죠.

위원장(○○○ 위원)

예.

다른 데 가면 그거 달라고 해서해야 되는 일이라, 사실은 쉬운 일은 아
니에요.

○○○ 위원

다른 데에서는 못 하는 거죠, 이게요.

제20호 안건결론

위 원 장(O O O 위원)

이 정도 논의를 하고 거수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섯, 그래서 본 안건은 적정으로 심의되었고요.

O O O 위원님, 자세하게,

O O O 위원

예.

위 원 장(O O O 위원)

제목도 저는 바뀌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자세하게, O O O 위원님도 아
까 구체적으로 이게 전략수립이 아니라 구체적인,

O O O 위원

예, 개발사업수단을,

위 원 장(O O O 위원)

개발사업수단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잘 적어주시기 바랍
니다.

O O O 위원

예.

위 원 장(O O O 위원)

그다음에 21번, 다섯 개 남았습니다.

제21호 안건

도시계획시설 기능 고도화 방안 연구

위 원 장(O O O 위원)

앉으세요.

짧게 필요성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1호 안건설명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그다음에 혹시 보완된 내용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제21호 안건설명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시설,

위 원 장(O O O 위원)

21, 22가 같이 하시나요?

제21호 안건설명자

아닙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아닌가요?

제20호 안건설명자

한 건입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예.

제21호 안건설명

제21호 안건설명자

시설정책팀장 000이고요.

000 주무관 같이 왔습니다.

이번 건은 도시계획시설 기능고도화방안 연구입니다.

서울이 성장을 확 할 때 대량으로 급속히 기반시설을 이렇게 공급을 했었는데요.

변화된 여건에 맞게 도시계획시설의 잠재력을 활용해서, 입체복합개발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그린 용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은 기본적으로 기반시설, 도로건 학교건 자동차정류장이건 이런 기반시설들 중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시설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설치할 때는 수용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 용도로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들이 서울시는 61% 이렇습니다.

한편, 지금 보면 서울은 마곡 정도를 거의 마지막 개발단지가 고갈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주택공급하자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바람직하기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른바 브람필드 이런 기준에 인프라가 되어 있는 이런 시설들을 입체복합적으로 활용해서, 이렇게 필요한 시설공급을 하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운영 실태를 조사해서 저이용되거나 저활성화된, 그리고 양적으로 확 공급하고 나서 노후화된 이런 시설들을 다시 할 때는 입체복합적으로, 이런 기준들을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하나의 용도로만 써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은요.

또 수법 중에 중복결정, 입체적 결정, 공간적 범위 이런 도시계획수법들이 쭉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술을 만들고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요구되는 시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그리고 서울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 이런 것들을 담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시설들은 아무래도 저이용, 저활성화 이런 시설들일 거고요.

주로 평면적으로 활용되는 시설들입니다.

이게 아마 자동차정류장, 주차장, 우수지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이를 테면 시설은 면적이 크게 있는데, 땅은 한 50% 이상이 놓고 있다든지 이런 시설들 내지는 용적률은 허용되는 게 상당한데, 그것의 30% 이하로 활용된다든지, 그리고 노후화된 이런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거고요.

이것들의 입체복합을 통해서 공급하려고 하는 시설들은, 결국은 서울의 미래먹거리를 위한 것, R&CD의 공간일 수도 있고 내지는 임대주택 만들기 하고 있는데 임대상업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를 테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고 하면, 공급해야 되는 임대주택의 모든 물량을 사실은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화를 통해서도 공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테면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개발가능지가 고갈된 이런 여건에서 도시계획시설

이 60%에 이르고, 그래서 이 잠재력을 활용해서 입체복합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이것들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제21호 안건심의

위 원 장(O O O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발표하신 것 보면, 과업내용서에는 구체적인 시설에 대한 설명이 없었는데,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좋았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연구원이 수의계약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제21호 안건설명자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입체복합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은 한 2008, 9년쯤에 초보적인 형태이지만, 그러니까 중복 결정 할 수 있다, 입체 결정할 수 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스 오어 노로만 해주세요.

제21호 안건설명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차 용역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연구의 성과들이 누적되는 것은 역시 서울연구원.

그렇지만 서울연구만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행을 하더라도 엔지니어링 업체하고 협업, 그리고 특히 저희는 SH공사하고 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허무한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진행과정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하고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꼭 예를 들면 이게 수익계약이 아니고 자유계약으로 틀어져도 괜찮다?

예스 오어 노.

제21호 안전설명자

일단 노입니다.

아까 그 측면에서요.

위 원 장(O O O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걸로요.

오케이.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O O O 위원

중복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제도적으로요? 그렇지요?

제21호 안전설명자

예.

O O O 위원

그런데 이 과업에서 하시겠다는 것은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도시계획시설에서 애는 이런 식으로, 애는 입체적으로, 애는 평면적으로.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교통정리를 하는 내용을 여기에다 담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위 원 장(O O O 위원)

유형화를 하겠죠.

제21호 안전설명자

예.

O O O 위원

어찌 됐건요.

제21호 안전설명자

말씀 그대로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지 대 부지인 시설을 섞을 때, 내지는 부지와 건축물을 섞을 때, 건축물과 건축물을 할 때, 이런 유형화들 가능할 것 같고요.

그때마다의, 지금은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입체복합화를 할 때 어

편 용도들을 주로 여기에 담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그 생활권 단위에서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될 시설들이 있을 것도 같고, 내지는 ‘시정책적으로 이런 용도들을 담아야 된다, 이 지역에.’ 이런 것들까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것들을 SH공사에 사업으로 돌리지 않으면 할 수는 있으되, 작동을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이루고자 합니다.

○○○ 위원

저도 어떤 의미인지 알겠는데, 그게 예를 들면 시대에 따라서도 사실은 요구하는 그런 시설들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요인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지금 그런 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애가 10년 후에 쓰면 그때 당시에 또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제21호 안건설명자

그것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만든다는 것이 일시에, 그래서 서울시 면적의 60%를 단기적으로 다 입체복합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노후 돼서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지, 그럴 때는 여전히 그 하나의 용도만 시설을 가질 거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입체복합화의 기준들을 명확히 하고, 단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이죠.

○○○ 위원

그렇다면 민간의 창의성을 갖다가 한번 이용을 해보시지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행정기관이 민간의 수익시설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민간투자법도 바뀌고 그랬는데, 그럼 계획 자체에 그러한 공공 시설이나 또 시설물들을 갖다가 민간의 자본과 민간의 창의성을 갖다가 이용해서 하는 거를 갖다가 이 보고서에 담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제21호 안건설명자

실제로 사업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공공의 영역에서 공급해야 될 시설도 있을 테고요.

당연히 민간 부분에서 공급해야 될 시설들이, 그러니까 두 가지 이용이

다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하려고 하는 학술연구는 그것들을 하기 위한, 이를 테면 도시계획 시설을 이 기능 자체를 무력화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기능들은 기능대로 이렇게 유지하거나 강화하면서도, 어떻게 그 잠재력을 활용해서 입체복합화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기준을 서울연구원과 엔지니어링 업체, 그리고 SH라든지 이렇게 해서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사업과정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851쪽에 보면,

위 원 장(○○○ 위원)

질문이지요?

○○○ 위원

예.

시설계획과에 기술용역하고 학술용역 네 개 올려놓으셨거든요.

상호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제21호 안건설명자

851페이지요?

○○○ 위원

예, 851쪽이요.

제21호 안건설명자

이 기술용역들도 있는데요.

다음에 이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관리계획법, 이거는 기후,

○○○ 위원

제가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연구단을 무슨 기술용역체하고 SH까지 포함해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어떤 기술용역이고 여기 학술용역이 와 있잖아요.

제21호 안건설명자

예.

○○○ 위원

그래서 여쭙본 거예요.

위 원 장(○○○ 위원)

이거는 다른 건입니다, 이거는요.

제21호 안건설명자

다른 용역들입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이거는 아예 다른 건입니다.

제21호 안건설명자

이 건에 맞는, 그러니까 주는 서울연구원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가 협업하는 형태.

O O O 위원

알겠습니다.

제21호 안건설명자

예.

위 원 장(O O O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1호 안건설명자

저희 부서 사실 도시계획국이라는 게 이런 용역들을 하는 게 일의 전부이고, 사실은 이 기준을 만드는 게 중장기적으로 서울시의 도시공간을 바꾸는 것들인데요.

사실 도시계획과는 연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와서 보니까 시설이 상대적으로 연구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거 꼭 좀 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감사합니다.

제21호 안건설명자

고맙습니다.

제21호 안건설명자

고맙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예, 들어가세요.

(설명자 퇴장.)

도시계획시설 기능 고도화 방안,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것들

을 좀 정리하겠다 하는 거였고, 제가 논의필요를 한 것은 보고서상에서는 사실은 도시계획시설이 95개인가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구체적인 나열 없이 그냥 전부 다 하는 것처럼 해놔가지고, 이거 어떻게 다 하나 했더니, 아까 이용도라든지 평면적인 토지라든지 해서 뭔가 구체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사전검토 결과 위에 것은 적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서울연구원이 해야 되겠느냐.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토의하고 이거는 그래서 두 건으로, 적정 여부 판단하고 그다음에 계약방법 손 들어서 거수해서 판단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의견 또 있으시면 의견 주십시오.

〇〇〇 위원

이 적정 판단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제가 851쪽 여쭙았던 것은 이거는 총괄계획이잖아요, 지금 우리 협의, 논의한 거는요.

고도화 방안 전반적인 것인데, 그 851쪽 표 1, 2, 3, 4 보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도로 공간의 이야기가 있고,

위 원 장(〇〇〇 위원)

아니요, 이거는 다 다른 것입니다.

〇〇〇 위원

다른 과제인데, 이 과제가 같은 시설계획과로 서울연구원에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기술용역으로 되어 있어서 관리가 잘돼야 될 것 같은, 특별히 우려가 되어서,

위 원 장(〇〇〇 위원)

예.

〇〇〇 위원

그러니까 시설계획과에서 연관 과제들에 대한 용역관리를 참 잘해 주면 좋겠다.

어떤 거를 좀,

위 원 장(O O O 위원)

자기들이 올해 이거, 내년에 이거 하겠다고 그냥 다 올려놓은 것,
간 사(시정연구팀장)

한꺼번에 통으로 방침을 받은 겁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올려놓은 거고요.

간 사(시정연구팀장)

네 개 과제를 한꺼번에 받았는 건데,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별
히 말씀드린 것처럼,

위 원 장(O O O 위원)

‘사실은 중복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

O O O 위원

총괄이 있고 세부가 있는데 이게 같이 가지 않으면, 도로 얘기는 바로
여기에서 한 얘기가 도로 얘기가 별도과제가 있거든요.

서로 어긋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용역관리를 같은 과,

위 원 장(O O O 위원)

예, 기술로 가니까,

O O O 위원

예, 이게 다른 쪽으로 가버리면,

위 원 장(O O O 위원)

이 기술심사하면서 이게 만약에 되면 이거 하니까 예를 들면 ‘이거 하
지 말라’라든지 이거랑 이거랑 합쳐서,

O O O 위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죠.

제21호 안건결론

위 원 장(O O O 위원)

그렇죠.

그렇게 나중에 합니다.

합쳐가지고 기술심사하실 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면 21번 도시계획시설 기능 고도화 방안에 관련돼서 거수를 통해서 걱정, 부적정 먼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본 안건은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거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약이 수의계약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 분은,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세 분, 그래서 수의계약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 분은 세 분이었고요.

그러면 자유계약인가요?

아니면,

○○○ 위원

일반.

간 사(시정연구팀장)

일반경쟁.

위 원 장(○○○ 위원)

일반경쟁이요?

일반경쟁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일반 위원이 다섯 분이어서 본 안건은 적정으로 심의되었고, 계약방법은 일반계약인가요?

간 사(시정연구팀장)

예.

위 원 장(○○○ 위원)

일반계약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다음 22번 하겠습니다.

○○○ 위원

다른 데에서는 일반경쟁이라는 말을 썼나요?

○ ○ ○ 위원

일반경쟁,

제22호 안건

기후변화 대응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제22호 안건설명자

안녕하십니까.

위 원 장(○ ○ ○ 위원)

예.

제22호 안건설명자

시설계획과 생태환경계획팀장 ○○○입니다.

위 원 장(○ ○ ○ 위원)

짧게 필요성 중심으로 설명해 주세요.

제22호 안건설명

제22호 안건설명자

예.

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 사업은 도시기본계획 2040 수립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앞으로 장래에 예측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계획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지금 도시열섬 현상 때문에 도시 건조화돼서 생태계가 파괴가, 훼손되는 부분이 있고, 또 도시열섬현상이 도시상공의 미세먼지 돔을 형성을 해서 대기오염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서 사회·경제적 비용이 상승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올 여름과 같이 이상기온 현상 극심했는데요.

이렇게 열섬 현상이 가중될 때 이, 그러니까 미세먼지 돔 형성이나 열섬현상으로 인한 부작용도 더 커질 것이고, 향후에 이상기온 발생 빈도나 강도가 더 커질 거를 염두에 둘 때 도시열환경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를 통해서 도시열섬 완화를 위해서 열환경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시계획적 수단을 통해서 열확산 등 도시환기성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방안들을 찾아보고, 그거를 제도화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제22호 안건심의

위 원 장(O O O 위원)

되셨나요?

제22호 안건설명자

예.

위 원 장(O O O 위원)

다 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주심위원인데요.

첫 번째 질문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항은, 사실은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도 굉장히 미시적이고, 굉장히 광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서울의 지역적 또는 미시적 미기후의 변화를 감지하고, 그것을 도시계획적으로 또는 시설계획과에서 어떤 조치를 함으로써 해서, 그런 계획적 틀을 적용할 수 있을지, 그게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22호 안건설명자

우선 기후변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국가적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한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직접 받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변화된 기후에 적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열섬 현상이 더 가중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의 관점에서 볼 때, ‘주풍향은 항상 편서풍이고 거시적인 기후가 서울이라는 공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지만, 실제 가로환경 안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됐을 때, 대기오염물질과 그 지역의 미기후 간에 상당히 상호교류작용을 합니다.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 서울의 평균기온이 얼마다 할 때, 각 지역의 갖춰진 조건에 따라서 열 환경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기상, 인공위성,

위 원 장(O O O 위원)

‘그거에 따라서 도시계획 내지는 도시계획적 틀을 다르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제22호 안건설명자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서울이 기성 시가화 된 도시인만큼 접근을 이원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그러니까 신축건물이나 증·개축하는 건물 부분에 있어서는
건물의 구조, 형태, 용적률, 이런 기존의 도시계획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반면, 시가화 돼서 건물의 구조적인 변화를 모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이 필요한데요.

건물녹화 부분도 단순히 벽면녹화, 옥상녹화 이럴 것이 아니고 식재 수
종에 따라서 오염물질을 흡착하는 성향도 다르고요.

그것이 어떤 구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수 같은 경우도 그냥 가
로수 높이에 따라서 시물레이션 해보면, 그 가로환경에서의 바람 확산
하는 성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건물의 천공개폐율이나 표
면거칠기, 공공률 이런 계량화된 수치들을 집어넣어서 이런 영향들을
그러니까 시물레이션 해보고, 우선은 한 시범공간을 정해서 이 시물레
이션하는 것들을 한번 영향을 보고,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야 더 효과적
일 것인지를 평가한 뒤에,

위 원 장(O O O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제목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인가요?

제22호 안건설명자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법에 관한 연구인데, 죄송합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그렇죠? 기법이나 지침 이런 거죠?

제22호 안건설명자

예, 제도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또 질문 있으신가요?

○○○ 위원

이게 연차로 2020년도 있잖아요.

제22호 안건설명자

예.

○○○ 위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22호 안건설명자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열 환경 취약지역이 어디인지 일단 현황 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그 열 환경에 따라서 어떤 도시계획적 기법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할지는 1차 년도에 한번 한 공간을 정해서, 취약지역이라고 생각되는 곳을 정해서 시범사업을 한 뒤에, 이것을 시 전체에 확산시킬 때 어떤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인지는 2000년도에 하고자 합니다.

○○○ 위원

장기 계속으로 가신다는 얘기인가죠?

제22호 안건설명자

예.

위원장(○○○ 위원)

그다음에 많은 조사 내지는 예를 들면 대기오염, 대기확산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기술적인, 기술용역에 해당하는 부분 아닌가요?

제22호 안건설명자

예.

위원장(○○○ 위원)

그런데 그거를 서울연구원에 수의계약을 해서 가능한가요?

제22호 안건설명자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서울연구원으로 일단은 정했는데, 그 이유는 서울에 대한 기본적인 빅데이터가 시정연에 축적이 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금 저희가 하는 조사조차도 빅데이터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울연구원에 일단 누적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장점은, 서울연구원이 시 업무를 주로 하시다 보니까, 제도화에 굉장히 능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서울연구원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기술연구원이나 유사한 이런 기술적인 장점을 갖고 있는 기관과 컨소시엄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자 합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서울기술원인가요?

뭐죠? 이번에,

간 사(시정연구팀장)

서울기술연구원.

위 원 장(O O O 위원)

서울기술원, 그렇죠?

거기에는 이런 전문가는 안 계신가요? 아직은 없나요?

제22호 안건설명자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기술원 쪽은 파악 못 했고요.

유사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예, 알았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설명자 퇴장.)

저는 일단 전체적으로는 적정이라고 판단했고요.

OOO 위원에서는 어떠한 의견,

OOO 위원C

기후환경본부가 있으니까, 그쪽의 자료를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그쪽의, 예.

그다음에 OOO 위원도,

○○○ 위원

저희는 아까 저기,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기후라는 부분에서 서울은 되게 미시적인데, 거기에서 또 다시 미시적인 부분에다가 시물레이션해 보고,

위 원 장(○○○ 위원)

할 수 있을까.

○○○ 위원

그거를 일반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의 축적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은데, 서울연구원이 그거를 다 할 수 있을지 그런 의구심은 있습니다.

위 원 장(○○○ 위원)

기술연구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 위원

아까 말씀하신 서울기술연구원은 올 초에 발족은 했는데, 인력충원이 아직 다 되어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연구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좋은 연구이긴 한데 실효성이 있을까 걱정이예요.

기후변화는 도시계획이나 이쪽에서 계속 뒤쫓아가지도 급한 상황인데,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구체적인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22호 안건결론

위 원 장(○○○ 위원)

이 정도 논의하고 걱정, 부적정을 거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섯, 그래서 본 안건은 걱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23, 24, 25는 빨리 하겠습니다.

세 개를 말을 제가,

간 사(시정연구팀장)

23은 장기사업이라서 올해 계속사업이고요.

제23호 안건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

위 원 장(O O O 위원)

앉으십시오.

도시빛정책과죠?

제23호 안건설명자

예.

위 원 장(O O O 위원)

앉으십시오.

죄송한데요, 이거는 장기지속과제이고요.

제23호 안건설명자

예.

위 원 장(O O O 위원)

그래서 설명 안 하셔도, 저희가 지난번에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하는 과제이니까, 주심위원께서 질문을 먼저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23호 안건심의

O O O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과 이 과제가 왜 저기, 거기 이 제도를 집행하려고 하는데 시의적절한, 시급한지를 설명을 해주시죠.

제23호 안건설명자

예, 알겠습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목적으로 법이 2012년2월1일자로 제정이 됐고요.

1년 유예기간을 뒤서 2013년2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빛공해방지법의 핵심은 조명환경관리구역입니다.

조명환경관리 1, 2, 3, 4종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그게 시민의 생활환경에 가장 적합한 1, 2, 3, 4종의 조명환경관리구역

이 지정돼야 1, 2, 3, 4종에 맞는 빛방사의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8월10일자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전국 최초로
지정을 했고요.

그런데 법에서는 5년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2012년8월9일이 되면, 2020년8월9일이 되면 모든 옥외조명, 공
간조명,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광고조명이 허가대상으로, 그리고 경관
조명, 장식조명이 공공이든 민간이든 이 법 적용을 받습니다.

이 방침 기준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6개월 남짓 남았는데 그전에 시민들이,

〇〇〇 위원

단속기준에 의해서 한다 이거죠?

제23호 안건설명자

예.

〇〇〇 위원

알겠습니다.

제23호 안건설명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실효성을 확보를 해야 제도가 시행이
잘될 것 같습니다.

위 원 장(〇〇〇 위원)

또 질문 있으신가요?

됐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너무 짧게, 미안합니다.

제23호 안건설명자

감사합니다.

(설명자 퇴장.)

위 원 장(〇〇〇 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심위원님.

〇〇〇 위원

저는 제도 적용이라는 거에 의해서 필요한 과제로 인식이 되었고요.

위 원 장(O O O 위원)

지속과제이니까요?

O O O 위원

예, 지속과제.

위 원 장(O O O 위원)

다른 데에서도 큰 이견이 없고, 예산에 대한 이야기 있나요? 아니죠?

OOO 위원C

예.

간 사(시정연구팀장)

예, 없습니다.

제23호 안건결론

위 원 장(O O O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거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본 안건은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24, 25 한 분이 하시나요?

아니면,

간 사(시정연구팀장)

예, 한 분입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예, 한 분이, 바로 하겠습니다.

제24호 안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4단계 성과관리 학술용역

제25호 안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력 진단 학술용역

위 원 장(O O O 위원)

오래 기다리셨죠?

그래서 좀 심의를 빨리 하기 위해서, 주심위원님이나 저희들이 다 내용을 읽었기 때문에 필요성은 다 인지를 했고요.

질문에 답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심위원님 지금 안 계시죠.

OOO 위원님께서 줄쳐있는 내용들을 한번,

제24,25호 안전심의

OOO 위원

1, 2, 3단계를 하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셨잖아요.

제24,25호 안전설명자

예.

OOO 위원

4단계 하시면서 4단계 모니터링에서는 혹시 달라진 점이라든지 기대하는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지요?

제24,25호 안전설명자

찾동은 두 가지 기재로 작용을 하는데, 일단 사회부담 증진에 대한 공공적 책임의 영역이 하나 있고, 하나는 주민의 참여라는 마을자치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가 될수록 주민참여영역이 강조되어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것에 관련된 지역의 변화양상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번 4단계에서는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OOO 위원

두 번째 저기 인력재구조화 부분이 있는데, 보면 인력진단도 결국에는 3단계 모니터링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기능개선 이런 거를 고려 하셔가지고 인력을 재배치한다는지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계신 건가요?

제24,25호 안전설명자

예, 내년이면 찾동이 5년차를 맞이하는데요.

찾동 업그레이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인력과 관련해서는 2015년도에 사업을 출발하면서, 2014년도에 별도의 용역 없이 기존의 보고서들을 참고해서 저희가 인력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요.

또 ‘인력 산출을 한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5년의 시점에서는 새롭게 인력에 대해서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방행정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말단기관인 종합행정기관으로서 동주민센터의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언, 정책적인 제언 이런 것들도 필요해서 용역을 한번 진행해 보고자 했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 맨 마지막 것, 인력진단 학술용역은 저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수의계약을 하시고, 동주민센터 성과관리, 4단계 성과관리는 서울연구원에 하신다는 말이죠.

그냥 제 상식적으로 보면 ‘성과관리를 해서 성과평가를 잘했으면, 그쪽에서 인력진단을 하는 학술용역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두개가 꼭 다른 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시죠.

제24,25호 안건설명자

사실은 성과관리도 서울연구원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부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 아니냐.’ 이런, 초기에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동의 평가를 맡아주실 기관이 없었습니다.

보건행정연구원이라든가 그때 여러 기관을 찾았었는데, 결국은 찾지 못해서 서울연구원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인력진단은, 마침 외부기관 중에 행안부에서 주민자치회 공공서비스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맡아주시겠다는 있는 데가 있어서, 이번에는 객관적인 진단을 받고 싶어서 지방행정연구원,

위 원 장(O O O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맡아주는 데가 있다고 하면 자유계약으로 풀어놓고, 그쪽에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객관적이고 남 보기에 좋지, 이거를

딱 찍어서 지방자치행정연구원에 쥐야 될 사유가 해주겠다니까 한다.

제24,25호 안전설명자

아직,

위 원 장(O O O 위원)

예를 들면 저희가 내부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도 다 이해를 하는데,

제24,25호 안전설명자

예.

위 원 장(O O O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게 좀 대외적으로도 자유계약으로 놓고, 자유경쟁으로 놓고 여기가 와가지고 준비 잘해가지고 PT 잘해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객관적이고 보기가 좋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4,25호 안전설명자

예, 제가 조금 오해를 살만한 말씀을 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위 원 장(O O O 위원)

아니요, 이 연구가 다 그런 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제24,25호 안전설명자

저는 그, 사실은 저희가 찾동 사업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연구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찾동 사업이 여러 가지 영역이 함께 혼재되어 있고, 바텀업 방식과 탑다운 방식의 정책이 함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정책을 이행하고 이것들을 잘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고 이미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마침 행안부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공사업도 이쪽하고 함께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연장선상에서 국정과제나 이런 것들하고 발맞추고, 저희가 2.0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O O O 위원

인력산출을 만약 조사하시게 되면 전수조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면 샘플링을 하시는 건가요?

제24,25호 안전설명자

저희가 책정한 1억이라는 게 객관적인 평가를 사실은 받고 산정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협의가 필요합니다마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 위원

전수조사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작아보여서,

위원장(○○○ 위원)

전수조사 못 할 걸요.

○○○ 위원

408개 동,

위원장(○○○ 위원)

408개 동 다 한다고 되어 있어요?

○○○ 위원

전수라고 하시니까,

제24,25호 안전설명자

예, 일단은 저희는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을 지방행정연구원이 알고 있나요? 모르시죠?

제24,25호 안전설명자

일단은 돈의 가치로만 이 사업을 생각하시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받아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위원장(○○○ 위원)

그럴까요?

○○○ 위원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제24,25호 안전설명자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위원)

그럼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제24,25호 안건설명자

감사합니다.

(설명자 퇴장.)

위 원 장(O O O 위원)

24번에 대한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OOO 교수님 안 계시고, 걱정이고 내용은 별 것이 없는 것 같고요.
예산이나 조직에서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간 사(시정연구팀장)

예.

제24호 안건결론

위 원 장(O O O 위원)

그러면 거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본 안건은 걱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5번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력진단 학술용역입니다.

수의계약의 적절성이 조금 문제가 되는 거였는데요.

이거 나눌까요, 그냥 갈까요?

O O O 위원

그냥 가지죠.

위 원 장(O O O 위원)

그냥 갈까요?

O O O 위원

자율로 가면 오히려 유찰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O O O 위원

시간만 더 걸릴 것 같아요.

위 원 장(O O O 위원)

그럴 것 같아요.

O O O 위원

그런데 성과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해도 되지 않나요?

시급한가요?

시급성을 모르겠어요.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는,

○○○ 위원

지금 예산을 확보를 안 하면, 내년에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 위원

아니 성과관리 24번 사업이 내년에 어차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가도 되는 것 아닌가요?

시급하냐고요.

○○○ 위원

모니터링사업은 매년 진행을 해오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인력진단이라는 것은 결국 3단계의 평가가 끝나면, 그거를
가지고 인력진단을 실시를 할 것 같습니다.

4단계는 내년에 한 거에 대해서, 금년도 했는 거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 위원

이거는 3단계까지 성과를 반영하는 거고요?

○○○ 위원

예, 매년 모니터링사업이고요.

제25호 안건결론

위 원 장(○○○ 위원)

그러면 마지막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력 진단 학술용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그래서 본 안건은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실 분은 사인 먼저 하시고 그리고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폐 회 17시50분.(2018년 9월 학술용역심의회(2일차))